견인 원가분석 및 견인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2014. 12.





제 출 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견인 원가분석 및 견인정책 개선방안 연 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4. 12.

서 울 연 구 원

원장 김수현

참 여 연 구 진

연구책임 연구위원 안기정

연 구 원 강태석

〈제목 차례〉

제	l장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1
	가. 과업의 배경1
	나. 과업의 목적2
	2. 과업의 범위2
	3. 내용적 범위3
	4. 과업진행 순서4
제	II장 서울시 현황 ·······7
	1. 일반현황7
	가. 위치 및 면적7
	나. 인구 및 가구수 8
	다. 자동차 등록현황10
	2. 교통 및 도로이용현황12
	가. 서울시 교통량 및 통행속도12
	다 가이가 소리트웨시크 미 브리트
	나. 서울시 수단통행인구 및 분담률14

데	III장 서울시 불법 주·정차 현황 ·······2	1!
	1. 불법 주·정차 ··································	L
	가. 정의	21
	나. 위반요건 및 조치	21
	2. 서울시 불법 주·정차 현황 ·······23	3
	3. 견인요금 현황	27
	4. 보관요금 현황	28
	5. 해외 견인 및 보관요금 적용사례	29
	6. 서울시 견인업체 현황	32
	7. 서울시 보관소 현황	35
	8. 보관소 업무	36
	가. 보관소 업무내용	36
	나. 피견인차량 보관 및 반환절차	37
	다. 장기보관차량 처리	38
	9. 서울시 견인 관련 업무추진 경위	39
데	IV장 견인업체 및 보관소 실태분석4	13
	1. 조사 개요	43
	2. 견인업체 근로자 처우 및 근로현황	45
	3. 견인실적 현황	46

	가. 연도별 견인실적46
	나. 월별 견인실적47
	다. 일별 견인실적47
	라. 시간대별 견인실적48
	마. 지역별 견인실적48
	바. 견인사유별 견인실적49
	사. 수납방법50
	아. 견인차량 운행거리 및 연비51
	4. 보관소 근로자 처우 및 근로현황52
	5. 피견인차량 보관현황53
제'	V장 견인 및 보관원가 산정 ······57
	1. 견인운송원가 요소별 산정 내역57
	2. 견인운송원가 산정 결과60
	3. 보관원가 요소별 산정 내역 62
	4. 보관원가 산정 결과63
	4. 보관원가 산정 결과 63
제'	4. 보관원가 산정 결과 63 VI장 견인 및 보관요금 개선방안 68
제'	
제'	VI장 견인 및 보관요금 개선방안68

가. 배기량별 차등요금 부과방식70
나. 견인된 지점에 따른 추가요금 부과방식80
4. 보관요금 개선방안81
제VII장 정책제언86
1.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객관화·일원화 필요 ··············· 86
2. 견인요금 부과방법 개선87
3. 견인대상차량 위치정보 전송 의무화91
4. 견인업체 평가 및 제재방안92
5. 견인작업 중 차량소유자 의사로 작업중단시 견인요금 부과94
6. 이륜차 견인정책 도입 검토95
부 록101
1. 견인업체 조사표
2. 보관소 실사표104
3. 승용차 배기량별 등급표106

〈표 차례〉

[丑	2-1] 서울시 및 수도권 인구 추이8
[2-2]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현황9
[2-3]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10
[2-4] 서울시 자동차 배기량별 등록대수11
[2-5] 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 교통량 추이12
[2-6] 서울시 도로유형별 통행속도 추이13
[2-7] 서울시 시간대별·요일별 통행속도 현황 ···································
[2-8] 서울시 수단통행인구15
[丑	2-9] 서울시 교통수단별 분담률15
[丑	2-10] 서울시 주차장 현황16
[丑	2-11]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및 주차장 확보율 추이 17
[2-12] 서울시 주차장 요금체계18
[丑	3-1] 단속주체별 단속실적 및 견인 현황23
[3-2] 자치구별 단속실적 및 견인 현황24
[丑	3-3] 서울시 단속실적 및 견인 추이(2012년~2014년 9월)25
[丑	3-4] 주요도시 견인요금 현황 ···································
[丑	3-5] 보관요금 한도 적용방법별 장단점
[3-6] 주요도시 보관요금 현황
[3-7] 영국 캠브리지 견인요금 적용현황
[3-8] 미국 시카고 견인 및 보관요금 적용현황
[<u>뀨</u>	3-9] 미국 LA 견인요금 적용현황

[표 3-10] 미국 LA 보관요금 적용현황 ····································
[표 3-11] 일본 오사카 견인 및 보관요금 적용현황
[표 3-12] 서울시 견인대행업체 현황 32
[표 3-13] 서울시 민간 견인업체 현황
[표 3-14] 서울시 구공단 견인차량 운영 현황
[표 3-15] 서울시 견인차량 보관소 현황
[표 4-1] 견인업체 근로자 근로현황46
[표 4-2] 견인차량 운행거리 및 연비51
[표 4-3] 보관소 근로자 근로현황
[표 4-4] 조사기간 내 피견인차량 보관기간 현황53
[표 5-1] 견인차량 운행에 따른 건당 유류비57
[표 5-2] 견인차량 감가상각비57
[표 5-3] 견인업체 인건비
[표 5-4] 견인업체 근로자 퇴직급여
[표 5-5] 견인업체 복리후생비
[표 5-6] 견인운송원가 산정 결과61
[표 5-7] 보관소 보관실적62
[표 5-8] 보관소 인건비63
[표 5-9] 보관원가 산정 결과64
[표 6-1] 화물차 견인요금 변경안70
[표 6-2]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172
[표 6-3]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1 장단점72
[표 6-4]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272
[표 6-5]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2 장단점73
[표 6-6]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3

[표 6-7]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3 장단점····································
[표 6-8]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4
[표 6-9]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4 장단점
[표 6-10]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574
[표 6-11]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5 장단점
[표 6-12] 배기량별 자동차세 예시
[표 6-13]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 평가표
[표 6-14]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별 견인수입 변화 추정
[표 6-15] 승용차 배기량등급별 연평균 등록대수 증감률 ···································
[표 6-16] 향후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대수 추정 ···································
[표 6-17] 향후 견인실적 추정····································
[표 6-18] 대안별 향후 견인수입 및 증가율····································
[표 6-19] 견인된 지점에 따른 추가요금 부과방식의 견인요금체계80
[표 6-20] 보관요금 한도 적용방법별 장단점
[표 7-1] 이륜차와 보행자 간 사고 현황95
[표 7-2] 서울시 이륜차 등록(신고) 현황(2014년) ····································

〈그림 차례〉

<그림 1-	1> 과업진행 순서
<그림 2-	1> 서울시 지역 현황
<그림 2-	2> 서울시 인구추이
<그림 2-	3>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그림 2-	4> 서울시 자동차 배기량별 등록비율1
<그림 2-	5> 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 교통량 추이2
<그림 2-	6>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 추이
<그림 3-	1> 지자체별 단속실적 및 견인율 2
<그림 3-	2> 지자체별 견인율 추이
<그림 3-	3> 서울시 견인업체의 견인차량 운영대수 2
<그림 3-	4> 피견인차량 보관 및 반환절차
<그림 4-	1> 원가 조사표 예시
<그림 4-	2> 견인업체 실사표4
<그림 4-	3> 견인차량 입고대장 예시
<그림 4-	4> 연도별 견인실적 추이
<그림 4-	5> 월별 견인실적 추이(2011년~2013년)
<그림 4-	6> 일별 견인실적 추이(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2일)····································
<그림 4-	7> 시간대별 견인실적 추이(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2일) &
<그림 4-	8> 지역별 견인실적 추이(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2일)····································
<그림 4-	9> 견인사유별 견인실적(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2일)
<그림 4-	10> 지역별 견인시유별 견인실적(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2일)

<그림 4-11> 견인요금 수납방법(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2일) ···································	
<그림 4-12> 견인요금 수납 및 견인업체 지급과정5	
<그림 6-1> 견인방법 예시	
<그림 7-1>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 스티커8	
<그림 7-2>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폰 앱 화면88	
<그림 7-3> 보도 위 불법 주차차량 단속 사진 9	
<그림 7-4> 이륜차 전용주차장 완공 전·후 사진96	
<그림 7-5> 이륜차 불법 주·정차 사례97	
<그림 7-6> 이륜차 견인 및 오사카의 이륜차 전용주차장9	

제 | 장 과업의 개요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 과업의 범위
- 3. 내용적 범위
- 4. 과업진행 순서

제I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O 1999년 견인료 인상 이후 약 15년 동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 동결
 - 1999년에서 2014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은 53.8%이며, 유류비는 3배 이상 인상 되었고 임금과 보험료도 함께 상승함에 따라 현시점에 적정한 수준의 견인원 가 재산정이 필요한 상황임
- O 서울시내 주차시설 확충 및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견인건수 지속적 감소
 - 지속적인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장확보율이 2000년 68%에서 2013년 126.5% 으로 증가하여 위반차량이 감소하면서 견인 필요성이 약화됨
 - 구청별 교통여건 및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처방향에 따라 연간 견인실적이 100건 내외인 업체에서 7천 건 이상인 업체까지 업체별 견인실적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
- 견인업체 휴·폐업의 증가와 견인차량 감소로 인해 신속한 견인활동 에 차질을 빚고 이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는 악순환구조
 - 서울시내 견인업체는 2007년 33개 업체에서 2013년 27개 업체로 감소하였고, 동기간 견인차량도 230대에서 100대로 감소하였음
 - 견인차량을 보유한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견인차량의 감소로 신속한 견인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동시다발적인 민원 발생시 대응이 불가능함

견인 원가분석 및 견인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O 고급 및 외제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견인활동이 주로 위험부담이 적은 경차와 소형차를 중심으로 이뤄져 서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음

나. 과업의 목적

- 어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견인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할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 산정
 - 견인비용을 부담하는 시민과 견인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양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재조정이 필요함
 - 원가의 타당성, 공익사업의 경영책임, 물가변동 및 제반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정요금 산정
 - 서비스원가주의,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른 견인 및 보관요금 현실화
- O 경차 및 소형차 견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개선하기 위한 차종 또는 배기량에 따른 차등요금체계 제시

2. 과업의 범위

- O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자치구를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전역의 모든견인업체 및 보관소를 대상으로 함
 - 견인업체 경영관련 자료는 전체 업체(29개) 중 휴·폐업 업체(3개), 자료 미제출 업체(3개), 통합관리업체(2개)를 제외한 21개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함
 - 보관소 경영관련 자료는 전체 보관소(23개) 중 자료 미제출보관소(2개), 통합 관리보관소(1개)를 제외한 20개 보관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함
- 이 시간적 범위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연도 자료 구득이 어려울울 경우 가장 최신 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견인활동 현황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2014년 11월 2일까지 2주 간의 실사를 통해 구득한 자료를 분석함

3. 내용적 범위

O 서울시의 일반현황 분석

- 서울시의 위치 및 면적, 인구수 및 가구수 현황,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량 및 통행속도 현황, 주차시설 현황 등을 파악함
- 또한 시민들의 수단통행량을 분석하여 수단별 분담률을 파악하고 향후 견인 활동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이용함

O 서울시의 견인 현황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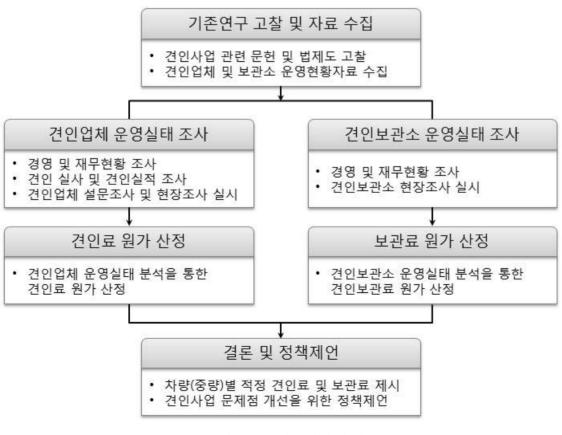
- 현재 서울시 견인차량 규모와 견인업체 및 근로자 현황, 견인요금 현황 등을 파악함
- 또한 최근의 견인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함

O 서울시의 피견인차량 보관 현황 파악

- 현재 서울시 보관소 및 근로자 현황, 보관요금 현황 등을 파악함
- 또한 보관소에서 작성하는 견인차량 입고대장 자료를 분석하여 자치구별 견 인활동 현황을 파악함
- O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의 현 요금체계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
 - 서비스원가주의,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른 견인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차종 또 는 배기량에 따른 견인요금 차등화 방안을 제시함
 - 또한 피견인차량의 견인지점별 급지수준이나 인근의 주차요금수준과 연계한 차등적인 보관요금 적용방안을 제시함

4. 과업진행 순서

- O 기존연구 고찰 및 자료 수집
 - 기수행된 견인료 및 보관료 원가분석 연구 및 견인사업 관련 법제도 고찰
 - 견인업체와 보관소의 경영현황 자료 수집 및 최근 3개연도의 견인현황자료 수집
- O 견인업체 및 보관소 운영실태 조사
 - 경영 및 근로자처우 관련 조사표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경영 및 재무현황 파악
- O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 원가 산정
 -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견인 및 보관요금 원가 산정
- 적정 요금체계 제시 및 현 견인사업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그림 1-1> 과업진행 순서

제 □ 장 서울시 현황

- 1. 일반현황
- 2. 교통 및 도로이용현황
- 3. 주차시설현황

제II장 서울시 현황

1. 일반현황

가. 위치 및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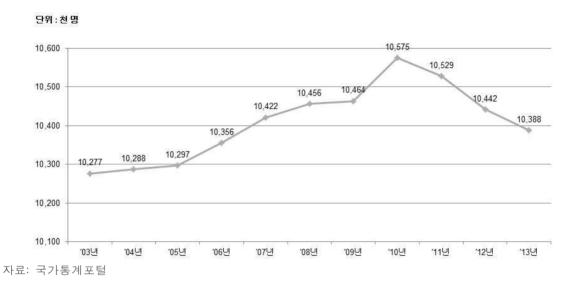
- O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펼쳐져 있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25개 자치구 행정구역으로 구분됨
- O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약 605.18km²로 전국(약 100,188km²) 면적의 약 0.6%를 차지함



<그림 2-1> 서울시 지역 현황

나. 인구 및 가구수

- O 서울시 인구는 최근 3년 간 감소추세를 보임
 - 2010년을 기준으로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2013년에는 전년 대비약 0.5% 감소하였음



<그림 2-2> 서울시 인구추이

○ 서울시 인구는 2013년 기준으로 약 10,388천 명으로 수도권 총 인구 25,868천 명의 약 40.2%를 차지함

[표 2-1] 서울시 및 수도권 인구 추이

(단위 : 천 명)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수 -	23,240	23,527	23,782	24,127	24,472	24,746	24,950	25,456	25,620	25,715	25,868
	든 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	10,277	10,288	10,297	10,356	10,422	10,456	10,464	10,575	10,529	10,442	10,388
	울 시	(44.2%)	(43.7%)	(43.3%)	(42.9%)	(42.6%)	(42.3%)	(41.9%)	(41.5%)	(41.1%)	(40.6%)	(40.2%)
	인 원	2,601	2,611	2,632	2,664	2,710	2,741	2,758	2,808	2,851	2,891	2,930
	천 시	(11.2%)	(11.1%)	(11.1%)	(11.0%)	(11.1%)	(11.1%)	(11.1%)	(11.0%)	(11.1%)	(11.2%)	(11.3%)
	 경	10,362	10,629	10,853	11,107	11,340	11,549	11,727	12,072	12,240	12,382	12,549
- 1	기 도	(44.6%)	(45.2%)	(45.6%)	(46.0%)	(46.3%)	(46.7%)	(47.0%)	(47.4%)	(47.8%)	(48.1%)	(48.5%)

자료: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포함)

-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양천구로 28,554명/km²로 나타남
 - 그 외에도 동대문구, 동작구, 중랑구, 구로구, 광진구 등은 km²당 2만 명 이 상의 거주민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문제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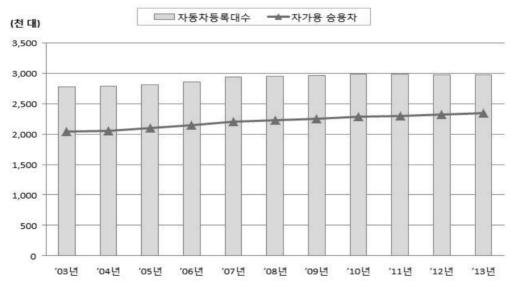
[표 2-2]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현황

エシフ	총인구	기구수	기구당 인구수	인구밀도	면적
자치구	(명)	(7円)	(명/기구)	(명/km²)	(km²)
 종로구	167,867	73,693	2.17	7,022	23.91
 중구	137,990	60,600	2.15	13,854	9.96
용산구	251,925	109,361	2.19	11,520	21.87
 성동구	306,571	126,447	2.37	18,190	16.85
	381,439	159,173	2.32	22,356	17.06
 동대문구	376,445	159,256	2.29	26,490	14.21
 중랑구	421,237	174,938	2.38	22,773	18.5
성북구	485,347	196,693	2.42	19,747	24.58
	341,921	141,246	2.40	14,490	23.6
도봉구	360,609	137,714	2.60	17,418	20.7
노원구	594,027	222,132	2.66	16,763	35.44
은평구	508,111	202,487	2.49	17,107	29.7
서대문구	324,067	135,272	2.32	18,405	17.61
마포구	391,098	166,780	2.29	16,407	23.84
양천구	496,934	180,443	2.73	28,554	17.4
	575,236	226,607	2.51	13,885	41.43
구로구	452,168	171,419	2.48	22,475	20.12
금천구	258,254	104,179	2.31	19,840	13.02
 영등포구	421,577	167,761	2.30	17,187	24.53
 동작구	421,487	172,700	2.38	25,773	16.35
 관악구	535,128	248,006	2.09	18,097	29.57
서초구	446,541	170,594	2.59	9,501	47
강남구	569,152	230,645	2.44	14,409	39.5
송파구	674,955	257,441	2.60	19,925	33.87
강동구	487,969	186,764	2.59	19,846	24.59
전체	10,388,055	4,182,351	2.43	17,165	605.2

자료: 서울시 통계자료(2013년 기준)

다. 자동차 등록현황

-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최근 10년 동안 약 20만 대(약 7%) 증가 하여 2013년 기준으로 약 2,973천 대로 집계됨
 -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3년 2,777천 대에서 2010년 2,981천 대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로는 규모가 유지되어 2013년 2,973천 대로 나타남
- O 자가용 승용차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약 1.4%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말 기준 2,338천 대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

<그림 2-3>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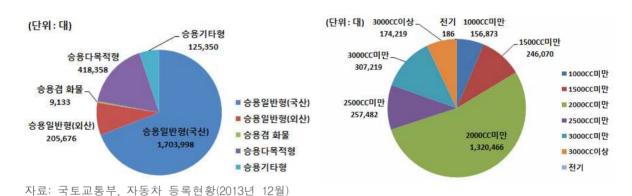
[표 2-3]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단위 : 천 대)

연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자동차 등록 현황	2,777	2,780	2,808	2,857	2,933	2,949	2,955	2,981	2,978	2,969	2,973
자기용 승용 차	2,042	2,055	2,094	2,140	2,205	2,225	2,248	2,283	2,302	2,317	2,338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

- 승용차의 용도별 등록현황은 일반형이 1,910천 대로 전체의 7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일반용도로 쓰임
 - 그 외 다목적형이 418천 대(17.0%), 승용겸 화물이 9천 대(0.4%), 기타형이 125천 대(5.1%) 등록되어 있음
- O 배기량별 등록현황은 15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중형차가 1,320,466 대로 전체의 53.6%를 차지함
 - 1000cc 미만의 경형차는 156,873대(6.4%), 1500cc 미만의 소형차는 246,070대 (10.0%)로 경소형차는 전체 승용차의 16.4%를 차지함
 - 2000cc 이상 2500cc 미만의 대형차는 257,482대(10.5%)
 - 이 연구에서는 2500cc 이상의 대형차는 고급차로 분류하며, 현재 481,438대가 등록되어 있어 전체 승용차 중 19.6%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2-4> 서울시 자동차 배기량별 등록비율

[표 2-4] 서울시 자동차 배기량별 등록대수

(단위 : 대)

구분	1000cc 미만	1500cc 미만	2000cc 미만	2500cc 미만	3000cc 미만	3000cc 이상	전기	전체
대수	156,873	246,070	1,320,466	257,482	307,219	174,219	186	2,462,515
비율	6.4%	10.0%	53.6%	10.5%	12.5%	7.1%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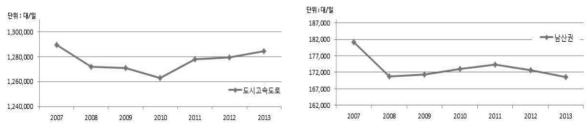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2013년 12월)

2. 교통 및 도로이용현황

가. 서울시 교통량 및 통행속도

1) 주요도로 교통량 추이

-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남산1·2·3호터널, 소파/소월로)의 연 도별 교통량은 2013년 기준으로 1,455,201대/일로 전년 대비 0.2% 증 가하는 추세를 보임
 - 도시고속도로의 일교통량은 2010년 약 126만3천 대 이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도 전년대비 0.4% 증가하여 약 128만5천 대로 나타남
 - 남산권의 일교통량은 2011년 약 17만4천 대를 정점으로 매년 약 1.2%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3년에는 약 17만 대로 나타남



주: 도시고속도로 : 내부순환(터널부), 강변북로(한강~동작), 올림픽대로(한강~동작), 북부간선(하월곡~월 릉), 동부간선(군자~장안),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수서IC~탄천IC), 경부고속도로(반포IC~서초IC) 자료: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그림 2-5> 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 교통량 추이

[표 2-5] 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 교통량 추이

(단위 : 대/일)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년대비
 계	1,470,727	1,442,563	1,442,177	1,435,774	1,452,493	1,452,125	1,455,201	0.2%
도시 고속도로	1,289,537	1,271,787	1,270,827	1,262,735	1,278,072	1,279,512	1,284,686	0.4%
남산권	181,190	170,776	171,350	173,039	174,421	172,613	170,515	-1.2%

자료: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2) 도로유형별 통행속도 추이

- O 서울시 도심 및 외곽의 평균 통행속도는 26.4km/h로 나타남
 - 도심부의 평균 통행속도는 2002년 16.3km/h에서 2013년 18.7km/h로 11년 동 안 약 14.7% 증가하였음
 - 외곽부의 평균 통행속도는 2002년 23.0km/h에서 2013년 26.6km/h로 11년 동 안 약 15.7% 증가하였음
 - 도심부와 외곽부의 통행속도 차이는 도심부가 약 7.9km/h 낮음

[표 2-6] 서울시 도로유형별 통행속도 추이

(단위 : km/h)

Ŧ	'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체	22.5	22.4	22.4	22.9	22.9	24.2	24.4	24.0	24.0	_	_	26.4
승 용 차	도심	16.3	15.5	13.6	14.0	14.4	16.7	16.7	16.0	16.6	_	_	18.7
	외곽	23.0	22.9	23.0	23.5	23.6	24.7	24.9	24.5	24.5	_	_	26.6

자료: 서울시, 2013서울통행속도보고

3) 시간대별 · 요일별 통행속도

- O 요일별 평균 통행속도는 일요일이 29.4km/h로 가장 높고 금요일이 25.4km/h로 가장 낮음
 - 평일의 통행속도는 평균적으로 25.9km/h로 나타남
 - 토요일 오전에는 31.0km/h로 높지만 점심시간대에 23.9km/h로 평일보다 낮아짐
 - 일요일 오전에는 34.2km/h로 높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차 낮아져 오후 늦은 시간에는 22.8km/h까지 낮아짐

견인 원가분석 및 견인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표 2-7] 서울시 시간대별·요일별 통행속도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km/h)

구분	시간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일	주말
전일	06:00 ~22:00	26.2	25.9	26.1	26.1	25.4	26.0	29.4	25.9	27.6
오전	07:00 ~09:00	25.6	26.8	27.1	27.2	27.1	31.0	34.2	26.7	32.5
· 낮 (점심)	12:00 ~14:00	26.8	26.2	26.3	26.2	26.0	23.9	27.7	26.3	25.7
오후	17:00 ~19:00	23.7	22.6	23.0	21.6	22.9	27.0	22.8	24.8	24.8

자료: 서울시, 2013서울통행속도보고

나. 서울시 수단통행인구 및 분담률

1) 수단통행인구 현황

- 서울시의 일일 수단통행인구는 총 54,825천 통행/일이며, 이 중 서울 시를 시·종점으로 하는 통행량은 32,150천 통행/일(전체의 약 58.6%) 로 서울 외곽 간 통행량인 22,675천 통행/일(전체의 약 41.4%)에 비해 약 17.3% 높음
 - 2012년 기준 서울내부통행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승용차 이용률이 19.5%, 택시는 8.9%를 차지함
 - 시계유출입통행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60.3%로 내부통행보다 낮으며, 승용차 이용률이 32.2%로 높고, 택시 이용률은 2.2%에 불과함
 - 서울 외곽 간 통행은 승용차 이용률이 48.9%로 가장 높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은 37.8%. 택시 이용률은 7.0%인 것으로 나타남

[표 2-8] 서울시 수단통행인구

(2012년 평일 기준, 단위 : 천 통행/일, %)

구분	초계	승용차		대중교통		택시	기타	
一	총계	- 58 사	계	버스	지하철·철도	백시	714	
서울 관련 계	32,150	7,442	21,073	8,798	12,275	2,226	1,409	
시골 단단 게	(100%)	(23.1%)	(65.6%)	(27.4%)	(38.2%)	(6.9%)	(4.4%)	
서울내부	22,911	4,466	15,507	6,770	8,737	2,023	914	
(서울↔서울)	(100%)	(19.5%)	(67.6%)	(29.5%)	(38.1%)	(8.9%)	(4.0%)	
시계유출입	9,240	2,976	5,566	2,028	3,537	203	495	
(서울↔시외)	(100%)	(32.2%)	(60.3%)	(22.0%)	(38.3%)	(2.2%)	(5.3%)	
서울 외곽 간	22,675	11,089	8,560	7,093	1,467	1,587	1,439	
 시골 되극 간	(100%)	(48.9%)	(37.8%)	(31.3%)	(6.5%)	(7.0%)	(6.3%)	
<u></u> 초 게	54,825	18,531	29,633	15,891	13,742	3,813	2,848	
총계	(100%)	(33.8%)	(54.1%)	(29.0%)	(25.1%)	(6.9%)	(5.2%)	

주1: 버스는 시내외버스+마을버스+통근·통학·기타버스, 지하철·철도는 노선간의 환승객 포함, 기타는 도보 및 자전거를 제외한 오토바이, 화물차, 특수차

2) 서울시 교통수단분담률 현황

- 서울시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2012년 기준으로 대중교통 65.6%, 승용 차 23.1%. 택시 6.9%로 나타남
 - 승용차 분담률은 2002년 26.9%에서 2012년 23.1%로 10년 동안 약 3.8% 감소 하였음

[표 2-9] 서울시 교통수단별 분담률

(단위 : 천 통행/일, %)

											· - · ·		J/ E, /0/
구분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수단통행인구		행인구	29,680	29,375	30,344	31,004	31,196	31,509	31,705	31,948	31,156	31,885	32,150
	대	계	60.6	61.2	62.0	62.3	62.3	62.5	62.8	63.0	64.3	65.1	65.6
수	중 교	(버스)	(26.0)	(25.6)	(26.2)	(27.5)	(27.6)	(27.6)	(27.8)	(27.8)	(28.1)	(28.0)	(27.4)
단 분	통	(철히지)	(34.6)	(35.6)	(35.8)	(34.8)	(34.7)	(34.9)	(35.0)	(35.2)	(36.2)	(37.1)	(38.2)
담 률	승	용차	26.9	26.4	26.4	26.3	26.3	26.3	26.0	25.9	24.1	23.5	23.1
귤	Ę	택시	7.4	7.1	6.6	6.5	6.3	6.2	6.2	6.2	7.2	7.0	6.9
	-	기타	5.1	5.3	5.0	4.9	5.1	5.0	5.0	4.9	4.4	4.4	4.4

자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관련 통계자료, 2013.12.

주2: 「2013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2013.12)」의 연구결과임

3. 주차시설현황

- 2014년 3월 기준 서울시내 총 주차장수는 299,941개소이며 주차구획 수는 3,760,461면임
 -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주택의 주차장과 일반건축물 주차장으로 구성되며 주 차구획수는 총 3,512,585면으로 전체의 93.4%를 차지함
 - 주택의 주차장은 내집주차장 및 담장허물기로 추가된 주차장을 모두 포함하며 총 2,146,543면으로 나타남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366,042면으로 나타남
 - 노상주차장은 구영과 시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수는 총 143,573면 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함
 - 구영 노상주차장이 138,583면으로 96.5%를 차지하며, 시영 노상주차장은 4,990면 으로 나타남
 - 노외주차장은 구영과 시영, 민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수는 총 104,303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함
 - 구영 노외주차장이 48,818면, 시영 노외주차장이 11,743면, 민영 노외주차장이 43,742면으로 나타남

[표 2-10] 서울시 주차장 현황

(단위 : 개, 면)

구분		계	노상 ¹⁾	노외 ²⁾	건축물 부설 ³⁾	
주차장 수	개소	299,941	12,331	2,064	285,546	
	비율	100.0%	4.1%	0.7%	95.2%	
주차 구획수	주차 면수	3,760,461	143,573	104,303	3,512,585	
	비율	100.0%	3.8%	2.8%	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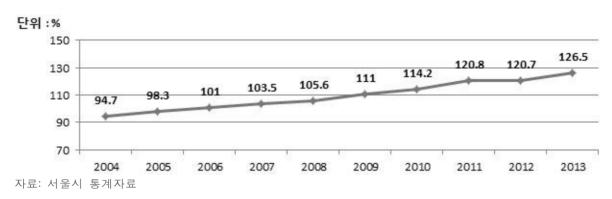
주1) 노상 : 구영 138,583면, 시영 4,990면

주2) 노외 : 구영 48,818면, 시영 11,743면, 민영 43,742면

주3) 부설 : 주택 2,146,543면(내집주차장, 담장허물기 포함), 일반건출묵 1,366,042면

자료: 서울시 통계자료, 2014.03.

- O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2004년 94.7%에서 2013년 126.5%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임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007년 이후부터 둔화되었지만 주차장은 지속적으로 매년 약 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이후부터 자동차 한 대당 주차면수가 1면 이상이 되어 주차난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
- O 주차장 확보율의 상승은 불법 주·정차 감소와 직결되는 사안임
 - 주차장 확보율 상승은 주차 가능한 공간이 많아짐을 의미함
 - 따라서 불법 주·정차 유인이 감소하게 됨



<그림 2-6>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 추이

[표 2-11]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및 주차장 확보율 추이

(단위 : 대. 면. %)

							(단위 · 대, 전,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자동차(A)	2,780	2,790	2,857	2,933	2,949	2,954	2,981	2,977	2,969	2,973
주차장(B)	2,632	2,721	2,885	3,036	3,115	3,279	3,404	3,595	3,584	3,760
확보율(B/A)	94.7	98.3	101	103.5	105.6	111	114.2	120.8	120.7	126.5

자료: 서울시 통계자료

견인 원가분석 및 견인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 O 주차장 요금체계는 급지별로 구분하여 급지별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요금수준이 가장 높은 1급지는 공영 노상주차장의 경우 1회 주차시 5분당 500원으로 2급지(5분당 250원)의 두 배 수준임
 - 또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3조에서는 공공기관 부설주 차장의 주차요금을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였으 며,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 ①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이 경우 급지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표 2-12] 서울시 주차장 요금체계

(단위 : 원)

		노상주	우차장	노외주차장			
구분	1회주차시	1일주차권	월 정기권		1회주차시 월 정기권		권
	5 분 당	야간 한정	주간	야간	5 분 당	주간	야간
1급지	500	5,000	ı	ı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_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_	_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_	100	환승-40,000 기타-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자료: 서울시 통계자료

제Ⅲ장 서울시 불법 주·정차 현황

- 1. 불법 주·정차
- 2. 서울시 불법 주·정차 현황
- 3. 견인요금 현황
- 4. 보관요금 현황
- 5. 해외 견인 및 보관요금 적용사례
- 6. 서울시 견인업체 현황
- 7. 서울시 보관소 현황
- 8. 보관소 업무
- 9. 서울시 견인 관련 업무추진 경위

제III장 서울시 불법 주·정차 현황

1. 불법 주·정차

가. 정의

- 주차란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차에서 떠나서 즉
 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함
 - 즉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차량에 싣고 내리는 등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하여 정지하는 의사로 정지를 하였을 때에는 정지한 시간에 관계 없이 주차를 한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O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함
 - 단 횡단보도나 교차로, 그 밖의 교통표지 등에 의하여 정지하는 것은 일시정 지로 볼 수 있으며 정차한 것이 아님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나. 위반요건 및 조치

- O 주·정차 또는 정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의 유형은 주로 다음과 같음
 - 표지 및 신호 유무에 관계없이 주·정차 및 정지가 금지된 장소에서 오랜 시 간 동안 주·정차하는 경우

- 주차금지표지가 있는 장소에서 주차한 경우
- 시간대나 주차공간이 제한된 장소에서 주·정차한 경우
-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경우
- 주차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 주·정차 행위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은 크게 도로교통법
 과 주차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도로교통법의 위반요건은 자동차가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이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금지장소에서의 정지 상태 이거나 주·정차 방법을 위반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함
 - 여기서 자동차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 차. 건설기계 등을 의미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항)
 - 도로교통법의 적용은 "도로"상에서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도로란 도로 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일반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교통광장 등)을 의미함(도로교통법 제2조)
- 주차법상의 위반은 거주자 전용주차 구획 내에서 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와 지정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시간주차 허용구역에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납부한 주차요금액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로 볼 수 있음
- O 위반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을 명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제35조)
 - 이 때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제36조)

2. 서울시 불법 주·정차 현황

- 서울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단속건수는 2013년 기준 총 2,648,506건 이며, 이 중 견인건수는 총 118,494건으로 견인율이 약 4.5%에 불과함
 - 총 단속건수 중 서울시에서 단속한 건수는 426,593건, 자치구에서 단속한 건수는 2,221,913건으로 나타남
 - 단 서울시는 견인단속이 아닌 과태료 부과 단속만을 실시하였음

[표 3-1] 단속주체별 단속실적 및 견인 현황

구분	단속실적	견인 현황	
下世	(건)	건수(건)	견인 율 (%)
서울시 단속	426,593	-	-
자치구 단속	2,221,913	118,494	5.3
전체	2,648,506	118,494	4.5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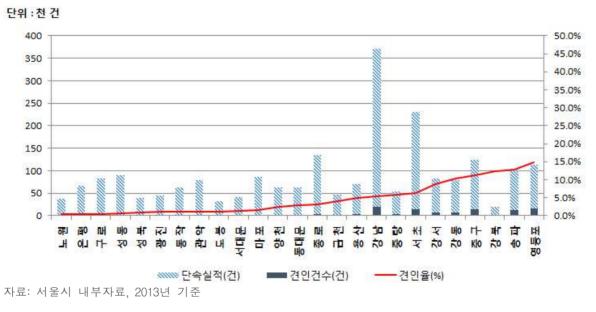
- O 자치구별 단속실적은 강남, 서초, 종로, 중구, 영등포, 송파 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간 10만 건 이상으로 나타남
 - 강남은 370,744건, 서초 230,351건, 종로, 134,909건, 중구 124,131건, 영등포 114,408건, 송파 104,78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주로 상권이 발달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임을 알 수 있음
- O 단속건수가 낮은 지역은 강북, 도봉, 노원, 성북 지역이며, 연간 4만 건 이하로 나타남
 - 강북은 19,682건, 도봉 32,723건, 노원 38,271건, 성북 38,82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은 주거지역임을 알 수 있음

[표 3-2] 자치구별 단속실적 및 견인 현황

귀리그	단속실적	견인 현황	
자치구 	(건)	건수(건)	견인율(%)
합 계	2,648,506	118,494	4.5
종 로	134,909	4,222	3.1
중 구	124,131	14,060	11.3
용 산	70,434	3,434	4.9
성 동	90,320	618	0.7
광 진	45,187	476	1.1
동대문	63,419	1,900	3.0
 중 랑	54,363	3,147	5.8
 성 북	38,829	323	0.8
 강 북	19,682	2,420	12.3
 도 봉	32,723	389	1.2
노 원	38,271	122	0.3
 은 평	66,815	341	0.5
서대문	42,281	587	1.4
 마 포	86,783	1,326	1.5
 양 천	62,298	1,514	2.4
 강 서	82,279	7,262	8.8
구 로	82,225	435	0.5
 금 천	46,117	1,871	4.1
영등포	114,408	16,921	14.8
동 작	62,595	665	1.1
관 악	79,241	856	1.1
서 초	230,351	14,277	6.2
강 남	370,744	19,951	5.4
송 파	104,787	13,308	12.7
강 동	78,721	8,069	10.3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3년 기준

- 견인율은 지자체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견인건수는 낮은 지역도 존재함
 - 강남, 서초, 종로 지역은 단속건수가 10만 건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견인건수는 각각 19.951건, 14.277건, 4.222건으로 단속 대비 견인율이 5% 내외임
 - 반면에 단속건수가 낮은 강북 지역과 영등포, 중구, 송파, 강동 지역은 견인 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견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지역은 노원, 은평, 구로, 성동, 성북 지역이며 이 지역의 단속 대비 견인율은 1% 이내로 낮음



<그림 3-1> 지자체별 단속실적 및 견인율

-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견인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견인율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2012년 단속실적은 총 2,709,292건이며 견인건수는 124,718건으로 단속 대비 견인율이 4.6%로 나타남
 - 2013년 단속실적은 총 2,648,506건이며 견인건수는 118,494건으로 단속 대비 견인율이 4.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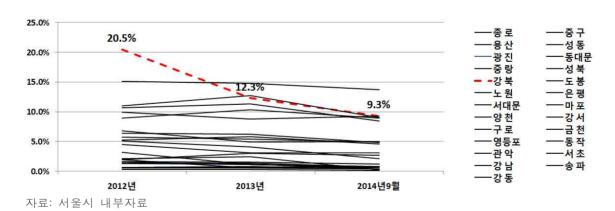
- 2014년 9월까지의 단속실적은 총 2,162,266건이며 견인건수는 81,917건으로 단속 대비 견인율이 3.8%로 나타남

[표 3-3] 서울시 단속실적 및 견인 추이(2012년~2014년 9월)

기준연도	고주어도 단속실적	견인 현황	
기군인도	(건)	건수(건)	견인 율 (%)
2012년	2,709,292	124,718	4.6
2013년	2,648,506	118,494	4.5
2014년 9월	2,162,266	81,917	3.8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 O 지자체별 견인율 추이를 보면 강북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3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강북 지역의 견인율은 2012년에 20.5%에서 2013년에 12.3%로 약 8.2% 감소 하였으며, 2014년 9월에는 9.3%까지 감소하였음



<그림 3-2> 지자체별 견인율 추이

3. 견인요금 현황

- 서울시를 제외한 타지자체에서는 5km를 기본요금으로 규정하고 추 가거리가 발생할 경우 1km당 추가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서울시 면적은 약 605.3km²인데 25개구로 구분하여 견인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견인거리가 짧아 추가거리에 따른 요금제는 적합하지 않음
- 부산시는 1996년 이후 동결됐던 차량별 견인 기본요금을 28.5%~ 33.3%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2014년 2월)
 - 부산시의 인상 후 견인요금은 6.5톤까지의 차량은 서울시의 현 요금과 비슷한 수준임. 단 서울시는 km당 추가요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부산시의 견인요금이 서울시보다 높을 것으로 보임

[표 3-4] 주요도시 견인요금 현황

(단위 : 원)

도시	2.5톤 미만	2.5톤~6.5톤	6.5톤~10톤	10톤 이상
서울	40,000	46,000	66,000	115,000
부산	40,000(5km)	45,000(5km)	50,000(5km)	50,000(5km)
	1km당 1,000 추가	1km당 1,400 추가	1km당 2,500 추가	1km당 2,500 추가
대구	30,000(5km)	35,000(5km)	50,000(5km)	50,000(5km)
	1km당 1,000 추가	1km당 1,400 추가	1km당 2,500 추가	1km당 2,500 추가
인천	30,000(5km)	35,000(5km)	50,000(5km)	50,000(5km)
	1km당 1,000 추가	1km당 1,400 추가	1km당 2,500 추가	1km당 2,500 추가
광주	20,000(5km)	25,000(5km)	40,000(5km)	40,000(5km)
	1km당 1,000 추가	1km당 1,400 추가	1km당 2,500 추가	1km당 2,500 추가
대전	30,000(5km)	35,000(5km)	50,000(5km)	50,000(5km)
	1km당 1,000 추가	1km당 1,400 추가	1km당 2,500 추가	1km당 2,500 추가
울산	30,000(5km)	35,000(5km)	50,000(5km)	50,000(5km)
	1km당 1,000 추가	1km당 1,400 추가	1km당 2,500 추가	1km당 2,500 추가

4. 보관요금 현황

- 서울시 견인차량 보관요금은 중소형차량은 30분당 700원, 대형차량은 30분당 1,200원이며, 1회 보관에 따른 보관료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O 타지자체의 견인차량 보관요금은 주차요금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대부분 1일 한도금액을 설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표 3-5] 보관요금 한도 적용방법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1회 한도	보관시간에 비례한 보관요금 징수	피견인차량 소유주 부담 비교적 큼
1일 한도	피견인차량 소유주 부담 감소	피견인차량 보관시간 상승 가능

- 보관요금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10여년 동안 동결된 상태임
 - 부산시는 기존 30분당 500원에서 30분당 900원으로 보관요금을 인상하고 1일 상한액을 신설했음(2014년 2월)

[표 3-6] 주요도시 보관요금 현황

도시	2.5톤 미만	2.5톤 ~ 6.5톤	6.5톤~10톤	10톤 이상
서울	30분당 (1회 보관료		30분당 (1회 보관료	,
부산	(보관일로부터	30분당 1개월까지 부과·징:	900원 수하되, 1일 보관료	15,000원 한도)
대구	30분당 500원 (1일 10,000원 한도, 1개월 경과시 100,000원 한도)			
인천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5분당 500원 (최고 12시간 적용. 24시간 경과시 1일 주차요금 적용)			
광주	기본 30분 500원, 추가 10분당 200원 (최초 1일 보관료 : 10,700원, 1일 보관료 : 10,800원)			
대전	30분당 500원 (보관일로부터 10일까지 부과·징수)			
울산	공영주차장 요금 준용. 1시간 1,000원 (1일 10,000원 한도)			

5. 해외 견인 및 보관요금 적용사례

○ 영국 캠브리지

- 영국의 1인당 GDP는 \$44,141로 한국 \$28,739의 1.54배
- 자동차 무게에 따른 정액요금을 적용하며, 기본요금은 \$90로 서울보다 2배 이상 높음
- 보관요금은 1일 \$27.50로 보관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요금을 부과
 - 노상주차요금은 시간당 \$1,00이어서 24시간 주차 시에도 보관요금보다 저렴함

[표 3-7] 영국 캠브리지 견인요금 적용현황

차량 구분	견인요금
10,000 lbs 미만	\$90.00
10,000 lbs 이상 18,000 lbs 미만	\$100.00
18,000 lbs 이상	\$260.00
snow emergency	\$110.00 추가요금 적용

주) 1 lbs는 0.453 kg

O 미국 시카고

- 미국의 1인당 GDP는 \$54.678로 한국 \$28.739의 1.90배
- 자동차 무게에 따른 정액요금을 적용하며, 기본요금은 \$150로 서울보다 4배 이상 높음
- 보관요금은 1일 \$20로 보관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요금을 부과
 - 노상주차요금은 시간당 \$2.00로 보관요금은 10시간 주차요금 수준임

[표 3-8] 미국 시카고 견인 및 보관요금 적용현황

차량 구분	견인요금	보관요금
8,000 pounds 미만	\$150	최초 5일 간 \$20/일, 이후 \$35/일
8,000 pounds 이상	\$250	최초 5일 간 \$60/일, 이후 \$100/일

O 미국 LA

- 견인시간 및 견인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을 적용하며, 기본요금은 \$121로 서울 보다 3배 이상 높음
- 보관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38/일이며 보관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요금 부과
- 단 카드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

[표 3-9] 미국 LA 견인요금 적용현황

차량 구분	견인요금	
일반차량	1시간 기본요금 \$121.00(현금결제시 \$118.50)	
글신사당	추가 30분당 \$60.50(현금결제시 \$59.00)	
	1시간 기본요금 \$232.50(현금결제시 \$227.50)	
대형차량	추가 30분당 \$116.00(현금결제시 \$114.00)	
	인력 추가시 시간당 \$52.00(현금결제시 \$51.00)	
	특수장비 필요시 시간당 \$351.50(현금결제시 \$343.50)	
	위험한 화물 선적차량 \$526.00(현금결제시 \$514.50)	
모든 차량	거리비 : 1mile당 \$7.00 추가	

[표 3-10] 미국 LA 보관요금 적용현황

차량 구분	보관요금
일반차량	1일 \$38.00(현금결제시 \$37.00)
1톤 이상 트럭 (길이 20피트 미만)	1일 \$42.00(현금결제시 \$41.00)
1톤 이상 트럭 (길이 20피트 이상 40피트 미만)	1일 \$53.00(현금결제시 \$52.00)
1톤 이상 트럭 (길이 40피트 이상)	1일 \$66.50(현금결제시 \$65.00)
	1일 \$10.00(현금결제시 \$10.00)

O 일본 오사카

- 일본의 1인당 GDP는 \$37,540로 한국 \$28,739의 1.31배
- 일본에서는 원동기자전거도 견인요금을 부과
- 보통자동차의 견인요금은 14,000엔으로 서울보다 3배 이상 높음
- 보통자동차의 보관요금은 30분당 300엔으로 서울보다 3.9배 높음

[표 3-11] 일본 오사카 견인 및 보관요금 적용현황

차량 구분	견인요금	보관요금
원동기자전거	5,000엔	
이륜차(총배기량 0.25리터 미만)	6,000엔	30분당 100엔
이륜차(총배기량 0.25리터 이상)	7,000엔	
보통자동차	14,000엔	30분당 300엔

○ 총괄

- 영국, 미국, 일본의 주요도시를 살펴본 결과 견인요금은 서울에 비해 2배에서 4배까지 높으며, 현 서울시 견인요금체계와 같이 무게에 따라 차등요금을 적 용 중임
- 영국과 미국의 보관요금은 요금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시간에 관계없이 1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관시간이 1~2시간으로 짧을 경우 시간당 \$10~ \$20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같음
- 일본 오사카의 보관요금은 서울과 같이 30분당 요금을 적용하며, 요금수준은 서울의 4배 수준으로 높음

6. 서울시 견인업체 현황

- 2014년 9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 행업체는 39개이며, 견인차량대수는 총 168대로 나타남
 - 또한 견인차량 운전기사 확보율이 견인차량 한 대당 한 명 수준이므로 대부 분 1인1차로 운행한다고 볼 수 있음
 - 등록되어 있는 견인업체 대상 실사 결과, 3개 업체가 실질적인 휴폐업 상태이며, 2개 업체는 두 개의 상호를 가진 동일업체임
- 2007년의 용역보고서¹)에 따르면 2006년 구공단을 제외한 견인업체 수는 32개였으며, 견인차량도 238대로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차량 이 운행되었음
 - 현재 29개의 민간 견인업체는 휴지차량 45대를 제외하면 현재 운행 중인 견 인차량이 25개구에서 123대에 불과하여 각 구당 평균 5대 미만임
 - 저조한 견인실적으로 인해 견인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견인차량 과 인원을 감축시키는 등 자구노력을 행한 결과로 보임

[표 3-12] 서울시 견인대행업체 현황

구분	어레스	인원수	견인차량 보유대수							
	업체수	[인권 ㅜ	일반	리프트	계	휴지	현재			
일반 민간업체	29개	99명	14대	128대	142대	45대	97대			
구공단	10개	27명	5대	21대	26대	0대	26대			
전체	39개	126명	19대	149대	168대	45대	123대			

¹⁾ 서울시(2007년 4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원가분석 연구용역. p.53

○ 민간 견인업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13] 서울시 민간 견인업체 현황

(단위 : 명, 대)

		61.01			· - - - - - - - - - - - - - - - - - - -		
담당지역	상호	인원	일반	리프트	계	휴지	현재
	와룡상사	3	0	3	3	0	3
~ ¬	삼문상사	4	0	6	6	2	4
중구	구일상사	5	0	5	5	0	5
성동, 광진	해동통상산업	3	0	4	4	1	3
	대신통운산업	4	0	4	4	1	3
성북, 동대문	영도렉카	1	1	3	4	2	2
동대문	승산특수운수	2	0	1	1	0	1
성북	장안상사	1	1	0	1	1	0
강북, 도봉	태원특수운수	5	0	4	4	1	3
 노원	노원렉카	7	2	4	6	0	6
 은평	명한환경	1	3	1	4	2	2
U CII D	재동렉카	0	1	0	1	1	0
서대문	대합에프에스엠	1	0	1	1	0	1
으시 미교	코리아특수운수	5	1	6	7	2	5
용산, 마포	용마특수운송	4	0	7	7	3	4
마포	한국하이테크운송	2	1	6	7	5	2
	남양렉카	3	0	3	3	0	3
강서, 양천	오신산업	6	0	7	7	1	6
od ⊏ π	해밀자동차	5	0	5	5	1	4
영등포	국제자동차	4	0	5	5	1	4
	상이산업	5	1	4	5	1	4
 구로, 관악	상일산업	4	0	5	5	1	4
 서초	씨큐산업	2	0	7	7	4	3
서소	서초특수운수	2	0	5	5	1	4
71.1	선진월드	4	2	7	9	4	5
강남	동양렉카	4	1	7	8	3	5
소리 가도	부흥운수	6	0	7	7	1	6
송파, 강동	강동운수	6	0	8	8	3	5
대형차량 1	서울대형특수운수	0	0	3	3	3	0
	<u>덕</u> 체	99	14	128	142	45	97

O 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14] 서울시 구공단 견인차량 운영 현황

(단위 : 명,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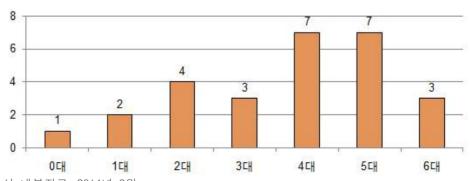
괴기교다	0101		Ż	·량보유대-	ት	
관리공단	인원	일반	리프트	계	휴지	현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0	1	1	0	1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0	0	1	1	0	1
 성북구도시관리공단	2	0	1	1	0	1
 강북구도시관리공단	1	0	1	1	0	1
 강서구시설관리공단	8	2	3	5	0	5
 양천구시설관리공단	0	1	0	1	0	1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6	1	7	8	0	8
	3	0	3	3	0	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	0	2	2	0	2
송파구시설관리공단	3	1	2	3	0	3
전체	27	5	21	26	0	26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4년 9월

O 견인업체당 평균 3.3대의 견인차량을 운영 중

- 견인차량을 4대 이상 운행하고 있는 업체가 17개로 대다수이지만 1대 운행하 거나 1대 보유하면서도 휴지상태인 업체도 존재함

단위: 개업체



<그림 3-3> 서울시 견인업체의 견인차량 운영대수

7. 서울시 보관소 현황

- 2014년 9월 현재 서울시내 견인차량 보관소는 23개소가 운영 중이 며, 이 중 4개 보관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그 외 19개 보관소 는 관리공단이나 구청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보관소 전체에서 총 1,583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음

[표 3-15] 서울시 견인차량 보관소 현황

보관소명	소재지	면적 (m²)	보관규모 (대)	일평균 보관차량(대)	운영주체
종로	서대문구 홍제동 323	2,004	47	11.6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중구	중구 의주로 2가 16-72	1,434	68	40	하이파킹(주)
용산	용산구 한강로3가 23-1	2,245	66	11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성동	성동구 금호동4가 56	1,136	38	10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동대문	동대문구 한천로 326(휘경동)	2,253	40	10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면목	중랑구 면목동 168-2	2,200	100	20	대신통운산업(주)
성북구	장위동 65-171	348	29	7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	강북구 삼양로 173길 112	1,735	65	60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도봉구	도봉구 도봉동 639	1,755	23	7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	노원구 상계동 770-2	1,000	60	3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은평	은평구 수색동 72-5	1,322	44	15	(주)명한캐리어
홍제	서대문구 홍제동 323	2,004	51	17.7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	마포구 상암로197(상암동)	1,255	75	20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양천	양천구 목1동 915	1,852	72	20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	강서구 양천로 59길 16-9	7,310	167	65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구로	구로구 개봉동 416-173	1,653	50	30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금천	금천구 가산동 614-34	2,514	31	6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35	2,341	76	74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관악동작	관악구 신림8동 1677-5	3,032	82	15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서초구	서초구 원지동 361-1	2,700	50	65	㈜서초특수
강남구	강남구 대치3동 78-20	3,000	200	120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	송파구 장지동 770-1	3,377	76	70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강동구	강동구 아리수로 91-54(강일동)	2,650	73	25	강동구청
전체	23개소	51,120	1,583	722.3	_

8. 보관소 업무

가. 보관소 업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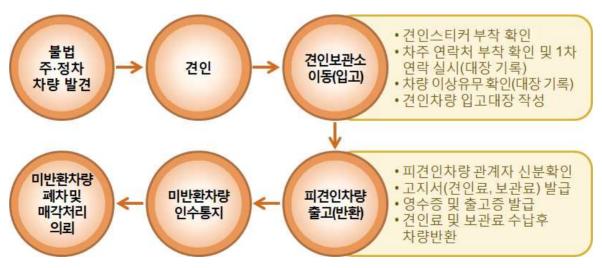
- 도로교통법 제36조에서는 견인차량의 보관 및 반환 업무를 그에 필 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견인차량 보관소는 관할 구청 및 경찰서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과 그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수납업 무와 1개월 이상 장기보관차량에 대한 매각 대행처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 견인차량 보관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로 견인된 차량 보관
 - 피견인차량의 견인료, 보관료 수납 및 반환 업무
 - 장기 미반환차량의 매각 및 폐차

나. 피견인차량 보관 및 반환절차

- O 피견인차량의 보관 및 반환절차는 다음과 같음
- O 불법 주·정차로 인해 견인된 차량은 관할 보관소로 견인되며, 견인 차량 보관소에 입고될 때 견인차량 입고대장을 작성함
 - 견인차량 입고대장에는 차량번호, 차종, 단속일시, 견인일시, 입고일시, 견인 사유 구분(불법주차 또는 부정주차), 단속장소, 견인업체 등의 세부항목을 작 성함
- 피견인차량의 반환은 차주가 견인차량 보관소에 방문하여 반환절차 를 거쳐 이루어짐
 - 반환절차는 피견인차량 관계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견인료와 보관료를 포함 한 고지서를 발급함
 - 카드나 현금결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과 출고증을 발급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견인료 및 보관료 수납 후 차량을 반환함
- 견인차량 보관소에 입고된 후 24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차량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미반환차량 인수 통지서를 발송함



<그림 3-4> 피견인차량 보관 및 반환절차

다. 장기보관차량 처리

○ 30일 이상 장기보관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도로교 통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견인장소 관 할구청에 강제처리를 의뢰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매각, 폐차, 말소, 소유자 등 고발절차가 이루어짐

「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 ①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 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 2. 매각일시
 - 3. 매각방법
 -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9. 서울시 견인 관련 업무추진 경위

- O 1999년 5월, 1993년 3월 견인요금 대비 약 31~33% 인상
- 2002년 1월, 10톤 이상 분리요금 차등화
 - 10톤 이상 자동차에 대해 기존 66,0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요금을 115,000원으로 차등화하였음
- 2003년에서 2007년까지 CCTV단속구간에서 견인하도록 10회에 걸쳐 법 개정 건의
 - 그러나 경찰청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는 근거로 불가 회시하였음
- 2003년에서 2008년까지 20회에 걸쳐 견인요금 인상 등 민원 제시
 - 시장면담, 감사원 민원제기, 시의회청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이 제기됨
- 2006년 7월, 나종웅 외 354인이 견인료 인상 관련 시민감사 청구
 - 갂사 결과 원가분석 견인료 현실화 방안을 권고하였음(2006년 10월)
- 2006년 12월, 견인료 및 보관료 원가분석 용역 발주
 - 용역 결과, 1일 대당 견인건수가 6.72건 이상이면 견인요금 인상 불필요하며, 1일 대당 견인건수가 4.59건 미만이면 약 12% 인상이 불가피함
 - 단, 견인업체의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는 별개임
- 2007년 5월, 견인요금 인상조정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시책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인상되지 않음
 - 견인협회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수준 견인율 유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함
 - CCTV에 의한 단속 시에도 견인가능하도록 법 개정 건의함
 - 용역결과 승용차 배기량별 차등부과 등 다각적 시행방안을 검토함
- 2007년 9월, 견인료 인상 등 시의회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O 2008년 6월, 견인요금 차등부과 및 보조금지원 요청민원 회신
 - 경형자동차 배기량별로 차등부과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결론
 - 경영수지 적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은 불가하며, 견인요금 인상보다는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함
- O 2008년 10월, 견인절차개선 민원에 대한 검토내용 통보(교통지도담 당관)
 - 시장 방침(2003년 8월)의 내용과 같이 단속공무원과 견인업체 간 동시단속 또는 견인업체 견인내용 통보를 지시함(제1부 시장 지시사항)
 - 단속차량, 번호, 위치, 시간 등 견인업체 정보제공 가능
 - CCTV 단속차량을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단속수립 필요
- O 2008년 12월, 주차위반 대형차량 견인단속 협조 요청(견인협회)
 - 실태조사 결과 21개 보관소 중 19개 보관소에 주차위반 대형차량 보관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에서 2012년까지 15회에 걸쳐 요금인상 건의 및 애로사항 호 소

제 🛮 🗸 건인업체 및 보관소 실태분석

- 1. 조사 개요
- 2. 견인업체 근로자 처우 및 근로현황
- 3. 견인실적 현황
- 4. 보관소 근로자 처우 및 근로현황
- 5. 피견인차량 보관현황

제IV장 견인업체 및 보관소 실태분석

1. 조사 개요

- O 원가 조사표, 견인업체 실사표, 견인차량 입고대장 자료를 이용하여 견인업체 및 보관소 실태분석을 수행함
- O 원가 조사표(견인업체 및 보관소 대상)
 - 2013년 기준 비용(차량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및 수입 조사
 - 전체 29개 민간견인업체 중 21개 업체 자료 구득 및 분석
 - 전체 22개 보관소 중 20개 보관소 자료 구득 및 분석

1. 견인 원가 조사표

	구 분	세부내역	연간 발생 원가 (단위 : 천원)	비고
	연료비	평균 소요량 × 단가		연료 종류 구분
1092	유지보수비			정비 및 유지비용
차	감가상각비			
량 비	주차비			자기일 경우 별도 표시
744	차량보험료			
	소계			
인	운전직	인원 × 평균 급여		연간급여 퇴직급여 포함
건	기타 인원			
비	소계			
	복리후생비	-		전작원4대화및4대등
일	사무관리비			į.
반 관	수도 광열비			납부 영수증 첨부
리	사무실 임차료			
비	기타 경비			항목 구분
	소계			
	기타 비용			
, , , , , , , , , , , , , , , , , , ,	계 (A)			
_	견인 수입			
수 입	기타 수입			
-	계 (B)			
연간	수지 (C = B - A)			

<그림 4-1> 원가 조사표 예시

- O 견인업체 대상 실사
 - 실사기간은 최근 2주일(2014년 10월 20일~11월 2일)임
 - 견인차량별 조사표를 통해 견인활동 내역을 조사함
 - 조사표의 내용은 영업시작과 종료시 차량계기판의 주행거리, 일일 주유비, 일 일 견인건수, 그리고 피견인차량의 등급 등임
 - 전체 29개 견인업체 중 21개 업체 자료 구득 및 분석
 - 단, 불완전한 자료나 이상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조사 1일차 -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차량 번]হ ()	[2페	이지의 운행차량 1	컨호	그 기입(①, ②, …)]
영업시작시	주행거리	영업종료시	주행거리		일일 주유비		일일 견인건수
()km	()km	()만원	()건

	본 조사에서는 피견인차량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견인시에 해당하는 등급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2.5톤 미만) / ② (2.5 ~ 6.5톤) / ③ (6.5 ~ 10톤) / ④ (10톤 이상) ⑤ (경형차) / ⑥ (소형차) / ⑦ (4천만원 이상 고급차) / ⑧ (수입자동차)																	
1회	피견인차량 등급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2회	피견인차량 등급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3회	피견인차량 등급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4회	피견인차량 등급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5회	피견인차량 등급	1	1	2	1	3	1	4	I	5	1	6	1	7	I	8	

<그림 4-2> 견인업체 실사표

○ 견인차량 입고대장

- 최근 2주일(2014년 10월 20일~11월 2일) 및 3개연도(2011년, 2012년, 2013년)
 - 입고대장은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작성하며, 피견인차량의 차량번호·차종·단속일 시·견인일시·입고일시·출고일시·견인료·보관료·수납방법·견인구분·단속동·견인업 체 등의 내용 포함

전인시간 입고남짜 입고시간 혼고남짜 2고시간 전인 보관료 수남방법 건인구분 단속동 오전 8:35:00 2014-10-20 오전 8:59:00 2014-10-20 오전 9:30:00 - - 카드 불법주차 일원동 오전 9:11:00 2014-10-20 오전 9:38:00 2014-10-20 오전 11:37:00 - 카드 불법주차 일원동 오전 9:35:00 2014-10-20 오전 9:53:00 2014-10-20 오전 10:33:00 - 카드 불법주차 일원동 오전 9:35:00 2014-10-20 오전 9:54:00 2014-10-20 오전 10:23:00 - - 카드 불법주차 일원동 건인업체 동양렉카 동양렉카 선진월드(주) 동양렉카 동양렉카 견인날짜 2014-10-20 2014-10-20 차량번호 단속날짜 단속시간 옵티마 2014-10-20 2014-10-20 오전 9:54:00 오전 10:05:00 오전 10:16:00 오전 10:24:00 오전 10:32:00 오전 10:41:00 오전 10:50:00 오전 11:03:00 오전 11:03:00 불법주차 개포동 불법주차 청담동 불법주차 개포동 2014-10-20 오전 9:55:00 2014-10-20 오전 9:55:00 2014-10-20 | 2014-10-20 | 2-29-5500 | 2014-10-20 | 2-29-5500 | 2014-10-20 | 2-29-5500 | 2014-10-20 | 2014-10-20 | 2-29-5500 | 2014-10-2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 2-29-5500 동양텍카 선진월드(주) 동양텍카 동양렉카 동양렉카 동양렉카 제네시스 제네시스 옵티마 YF 선진월드(주) | 2014-10-20 | 2021 | 10:540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2014-10-20 | 전선필드(동양렉카 동양렉카 동양렉카 동양렉카 모전 11:20:00 오전 11:30:00 오전 11:37:00 오전 11:42:00 오전 11:51:00 오픈 12:07:00 오후 12:13:00 오후 12:15:00 오후 12:49:00 오후 12:49:00 오후 2:20:00 오후 2:31:00 오후 3:39:00 오후 4:03:00 2014-10-20 오전 11:58:00 스파크 sm5 골프 정보드(주) 동양력가 동양력가 선진월드(주) 동양력가 선진월드(주) 선진월드(주) 선진월드(주) 성진원드(주) 동양해가 선진원드(주) 동양해가 말리브 도요타 아우디 체어맨 로체 K5 소나타 YF

- 전체 22개 보관소 중 18개 보관소 자료 구득 및 분석

<그림 4-3> 견인차량 입고대장 예시

2. 견인업체 근로자 처우 및 근로현황

- 실제 견인활동을 하고 있는 24개 업체 대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구득이 어려운 3개 업체를 제외한 21개 업체 대상으로 근로자 처우 및 근로현황을 조사하였음
- 견인업체당 운전직 근로자수는 평균 3.9명이었으며, 운행차량대수는 평균 4.0대로 나타남
 - 견인차량 1대당 운전직 근로자는 1.02명임
- 운전직 근로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월평균 25.1일, 일평균 13.1시간 근무함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제시한 2013년 말 기준 상용근로자(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는 21.5일로 견인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4.2일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은 8.4시간으로 견인운전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4시 간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임금총액 또한 상용근로자는 약 3,329,000원인데 견인운전직 근로자는 이보다 약 36만원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O 관리직 근로자는 업체평균 0.95명으로 운행차량 4대당 1명의 비율임
- O 관리직 근로자는 월평균 22.8일, 일평균 8.4시간 근무함

[표 4-1] 견인업체 근로자 근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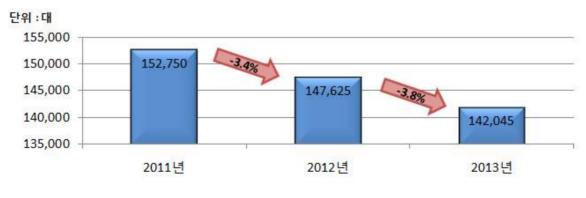
(단위 : 명, 일/월, 시간/일, 원/월, 대)

구분	근로자수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급여	운행차량대수
운전직 근로자	3.4	25.1	13.1	3,607,538	0.0
관리직 근로자	0.95	22.8	8.4	3,076,282	3.3

3. 견인실적 현황

가. 연도별 견인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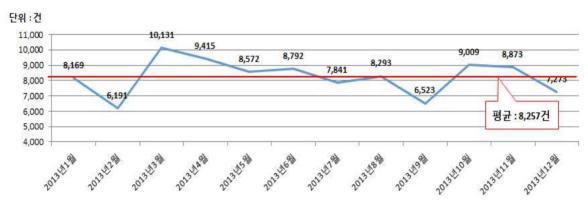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견인차량입고대장 자료(20개 보관소 자료) 를 이용하여 연도별 견인실적을 분석함
- 2013년의 견인실적은 2011년에 비해 약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22개 보관소 중 20개 보관소의 2011년 견인차량 입고대수는 152,750대 였으며, 2012년에는 147,625대, 2013년에는 142,045대로 매년 3%~4%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4-4> 연도별 견인실적 추이

나. 월별 견인실적

- 월평균 견인실적은 8,257건이며, 봄(3~4월)과 가을(10~11월)에 다소 높게 나타남
- 겨울철(12월~2월)에 견인실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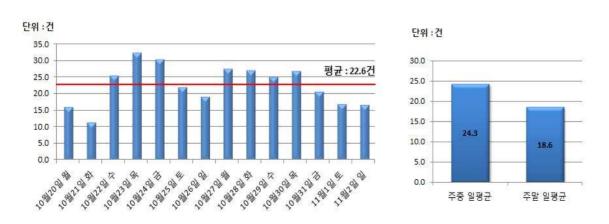


자료: 17개 보관소의 견인차량 입고대장(2013년)

<그림 4-5> 월별 견인실적 추이(2011년~2013년)

다. 일별 견인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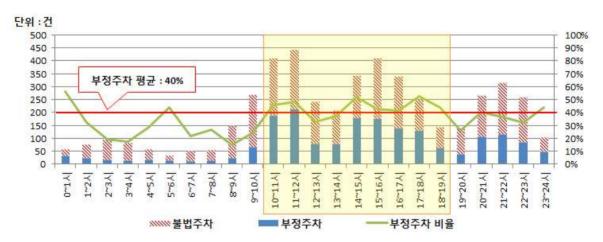
- 전체 22개 보관소 중 18개 보관소의 견인차량 입고대장 자료 분석 결과, 보관소당 일평균 입고대수는 22.6건으로 나타남
- 주중에는 보관소당 24.3건, 주말에는 보관소당 18.6건으로, 주중에 약 30%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일별 견인실적 추이(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2일)

라. 시간대별 견인실적

- 새벽시간대(23시~8시)에 견인실적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주로 점심시간대(12~14시)를 제외한 업무시간대(9시~18시)와 야간 (20시~23시)에 견인실적이 높게 나타남
- 이 시간대별 견인사유를 살펴보면, 견인실적이 높은 시간대에는 부정주차로 인한 견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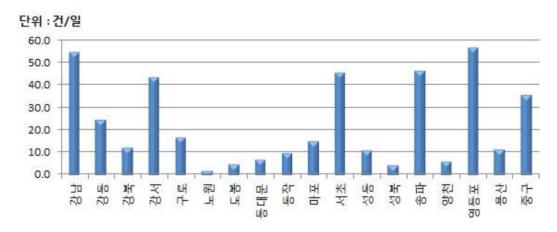


<그림 4-7> 시간대별 견인실적 추이(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2일)

마. 지역별 견인실적

- 견인실적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영등포, 강남, 송파, 서초, 강서 순으로 높으며 일평균 40건 이상의 피견인차량이 보관소에 입고됨
- 그 외 지역은 일평균 견인건수가 20건 미만임
 - 특히 노원구는 일평균 견인건수가 1.7건으로 나타나 견인활동이 거의 이뤄지 지 않는 상태에 있음
- 각 자치구마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방침이 달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견인실적이 높은 강남·강서·서초·송파·영등포·중구 등은 상권과 거주지가 밀 집되어 있고 교통혼잡이 비교적 심한 지역임

- O 서울시내 동일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방침 적용이 필요함
 - 각 자치구당 1~2개의 견인업체가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별 편차 가 심할 경우 견인업체마다 수익과 업무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역별 견인률의 차이로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음



<그림 4-8> 지역별 견인실적 추이(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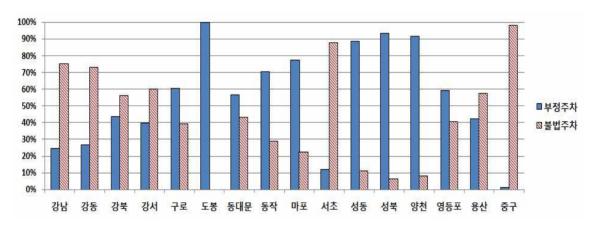
바. 견인사유별 견인실적

- O 견인사유는 불법주차와 부정주차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견인을 불법주차로 분류하며, 그 외 주차장법 위반이나 민원에 의한 견인을 부정주차로 분류함
- 견인사유별 견인실적 분석 결과,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된 차량이 60%이며 그 외 40%가 부정주차로 견인된 것으로 나타남
 - 보관소당 일평균 입고대수는 20대이며, 이 중 12대가 불법주차로 견인되었고 8대가 부정주차로 견인되었음
 - 견인사유별 견인실적 분석에 사용된 자료(16개 보관소)는 견인사유 항목이 입고 대장에 기입되지 않은 자료(2개 보관소)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일평균 입고대수는 앞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음



<그림 4-9> 견인사유별 견인실적(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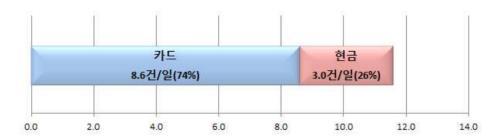
- 견인사유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 강남·강동·강북·강서·서초·용산·중구 지역은 불법주차 견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지역은 부정주차 견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함



<그림 4-10> 지역별 견인사유별 견인실적(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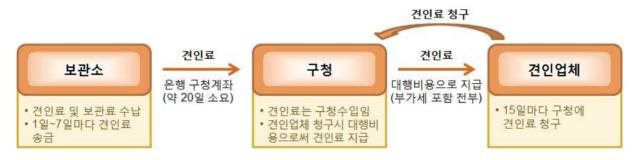
사. 수납방법

- 견인요금 수납방법은 약 74%가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나머지 26% 가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남
- O 현재 카드결제 수수료는 카드사마다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2.5% 수준임
 - 4만 원 카드결제시 1천 원의 카드수수료가 발생함
 - 현재 견인요금의 카드수수료는 구청에서 전액 지원하지만, 보관요금은 미지 원함



<그림 4-11> 견인요금 수납방법(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2일)

- O 견인요금 수납 및 견인업체 지급과정
 - 보관소에서 견인요금을 수납한 후, 구청으로 송금
 - 이후 견인업체가 청구시(한 달에 2회) 대행비용으로써 견인요금 지급



<그림 4-12> 견인요금 수납 및 견인업체 지급과정

아. 견인차량 운행거리 및 연비

- O 견인 한 건당 운행거리는 18.17km로 나타남
- 견인 한 건당 유류비는 약 5,569원으로 나타남

[표 4-2] 견인차량 운행거리 및 연비

건당 운행거리	연비	유류 단가	건당 유류비		
(km)	(km/ℓ)	(원/ℓ)	(원/건)		
18.17	5.34	1,636.68	5,569		

주) 유류 단가 : 2014년 평균 유가 적용(오피넷)

4. 보관소 근로자 처우 및 근로현황

- 현재 서울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23개 보관소 대상으로 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자료 구득이 불가한 2개 업체를 제외한 21개 업체 대상 으로 근로자 처우 및 근로현황을 조사하였음
 - 단 홍제보관소와 종로보관소는 통합·운영되고 있어 두 보관소를 하나로 통합 하여 분석하였음
- 보관소 근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근로자수는 평균 3.7명이 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평균 4.1명으로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 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거의 일대일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O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20.5일 근무하고 있으며 일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제시한 2013년 말 기준 상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는 21.5일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이보다 1일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상용근로자의 근무시간(8.4시간)과 비교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1.6시간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평균 2,271,767원으로 상용근로자 임금인 3,329,000원의 약 6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O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21.2일 근무하고 있으며 일평균 근무시간 은 9.9시간으로 나타남

[표 4-3] 보관소 근로자 근로현황

(단위 : 명, 일/월, 시간/일, 원/월)

구분	근로자수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급여		
정규직 근로자	3.7	20.5	10.0	2,271,767		
비정규직 근로자	4.1	21.2	9.9	1,782,463		

5. 피견인차량 보관현황

- 전체 보관소의 일평균 보관차량대수는 722.3대로 전체 보관가능규모 의 50% 이내로 나타남
 - 보관소별 일평균 보관차량대수는 강남구가 120대로 가장 많으며 영등포가 74 대, 송파구가 70대, 강서구 65대, 강북구 60대로 많은 반면 노원구, 금천, 도봉구, 성북구 등은 10대 이내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O 전체 중 92.8%가 견인당일에 차량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가 하루 보관 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기간(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2일) 동안 보관소에 입고된 차량은 총 5,706대이며, 입고대장에 입고시간 또는 출고시간이 기입되지 않은 2,355 개 자료를 제외한 3,351개 자료를 분석하였음
 - 전체 3,351건 중 92.8%인 3,111건은 견인당일 반환하였으며, 6.5%인 218건은 1일 보관 후 반환하였음
 - 그 외에는 2일 보관이 12건, 3일 보관 4건, 4일 보관 3건, 8일 보관 1건, 11일 보관 1건, 20일 보관 1건으로 나타났으며 매각 또는 폐차대상은 존재하지 않 았음

[표 4-4] 조사기간 내 피견인차량 보관기간 현황

보관일(일)	보관건수(건)	비율(%)
0	3,111	92.8
1	218	6.5
2	12	0.4
3	4	0.1
4	3	0.1
8	1	0.0
11	1	0.0
20	1	0.0
 전체	3,351	100.0
입고시간 또는 출고시간 미입력	2,355	-

제 ∨ 장 견인 및 보관원가 산정

- 1. 견인운송원가 요소별 산정 내역
- 2. 견인운송원가 산정 결과
- 3. 보관원가 요소별 산정 내역
- 4. 보관원가 산정 결과

제V장 견인 및 보관원가 산정

1. 견인운송원가 요소별 산정 내역

- O 차량비 중 연료비
 - 연료비는 견인 건당 평균 거리, 차량 연비, 연료 단가 등에 의하여 결정
 - 2014년 10월 20일부터 14일 동안 현장 조사 결과
 - 69대 운행 기록 중 자료미비 내역 제외한 65대 실적 기준

[표 5-1] 견인차량 운행에 따른 건당 유류비

운행거리	해당 차량	건당 운행거리	연비	유류 단가	건당 유류비
(km)	견인건수(건)	(km)	(km/ℓ)	(원/ℓ)	(원/건)
79,666	4,384	18.17	5.34	1,636.68	5,569

주) 유류 단가 : 2014년 평균 유가 적용(오피넷)

O 차량 유지비

- 업체마다 차량의 종류, 노후화 정도 등의 차이가 있어 표준화 어려움
- 2013년도 발생 원가의 평균치를 기준 원가로 정함

O 차량 감가상각비

- 차량 감가상각비는 차량의 취득가액, 내용년수, 잔존가치 등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됨
- 기준 원가는 현대 마이티 2.5톤 트럭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표 5-2] 견인차량 감가상각비

차량 취득가액(원)	내용년수	실 차량 가동률	잔존가치 (원)	1일 견인 횟수 (회)	건당 견인 원가 (원)
40,000,000	7년	77%	4,000,000 (10%)	5.37	3,407

O 기타의 차량비

- 주차비 및 차량 보험료 역시 업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원가 형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2013년 집행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함

O 인건비

- 인건비는 운전직 인건비와 관리직 인건비로 구분하여 산정
- 운전직 인건비는 보유차량과 근무 인원을 1:1로 보아 1대당 1인의 인건비를 산정
- 관리직은 실태 조사 결과 21개 업체의 평균 보유 차량 3.9대 대비 1.3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1대당 0.23명의 인건비를 반영함
- 인건비는 기본급, 상여 및 수당 그리고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수정 원가에서는 퇴직급여를 제외한 현금 지출원가만을 반영함

[표 5-3] 견인업체 인건비

714		인건비([1인/월)		월 평균	1일 견인	견인 건당
구분	기본급	상여	견인수당	계	근무일수	건수	인건비
운전직	823,913	868,760	1,914,865	3,607,638	25.14	5.37	26,729
관리직	1,886,785	1,126,905	_	3,013,690	24.31	5.37	5,349

○ 퇴직급여는 월급여의 1/12을 반영하였으나 대부분 자영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수정원가 산정시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함

[표 5-4] 견인업체 근로자 퇴직급여

구 분	견인 건당 인건비	퇴직급여 산정 비율	건당 퇴직급여
운전직	26,729	1/12	2,227
관리직	5,349	1/12	446
합 계	32,078	1/12	2,673

O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법정 복리후생비와 일반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급여의 14% 수준으로 산정
- 법정 복리후생비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장기보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의 고용주 부담액이며 일반 복리후생비는 식대. 피복비 등의 복리후생비로 구성
- 일반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 상 비과세 기준인 식대 10 만원을 급여 수준에 맞추어 비례로 산정함

[표 5-5] 견인업체 복리후생비

구 분		급여 대비 비율(%)	비고
	국민연금	4.5	-
	의료보험	2.99	-
법정	장기보호	0.17	-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0.90	-
	산재보험	2.22	-
	소 계	10.78	-
으반 복리후생비		3.22	월 10 만원 수준
	합 계	14	-

○ 기타의 일반관리비

-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타의 일반관리비는 재량적 비용으로써 회사마다 차이 가 있어 2013년도 집행 실적의 평균치를 적용함

○ 기타의 원가

- 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에는 업체의 이윤 또는 금융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바. 이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 사항임
- 견인업체의 경우 원가발생액에 대한 이자보상의 관점에서 평균 이자율 5%를 적용하여 그 50%(수입과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50%만을 반영)인 2.5 %를 적용하였음
- 기준 원가 산정에 따른 일시적인 요금 인상 요인이 30%를 초과함에 따른 변 동을 흡수하는 의미에서 조정 원가에는 상기 이윤을 미반영함

2. 견인운송원가 산정 결과

- O 다음의 세 가지 기준으로 1회 견인에 따른 원가 산정
 - 견인업체의 2013년 회계결산 기준
 - 기준원가: 연료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기타비용 등 보정
 - 수정원가: 기준원가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및 기타비용(이자비용 등) 제외
- O 2013년 회계결산 기준
 - 견인업체 재무제표 및 회계관련 조사표 분석
 - 견인 한 건당 5.519원 손실(요금 11.4% 인상 요인 존재)
 - 견인 한 건당 비용은 48,533원, 수입은 43,014원

O 기준원가

- 연료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회계자료 보정
 - 연료비는 1회 견인시 운행거리와 연비, 연료단가 등을 이용하여 보정
 - 감가상각비는 차량가격(4천만 원)과 내구연한(7년), 일일 견인횟수 등을 이용하여 보정
 - 인건비는 기본급, 근무일수, 일일 견인횟수, 평균 견인수당 등을 이용하여 보정
 - 퇴직급여 충당금 포함
 - 기타비용을 기본 이윤(원가의 2.5%)으로 보정
- 견인 한 건당 18,762원 손실(요금 30.4% 인상 요인 존재)
 - 견인 한 건당 비용은 61,776원, 수입은 43,014원

○ 수정원가

- 기준원가에서 퇴직급여 및 기타비용 제외
 - 견인사업은 대체로 자영업의 성격이므로 퇴직급여 제외
 - 견인업체 경영악화 원인이 요율보다는 가동률에 있으므로 기타 비용(기본 이윤) 제외

- 견인 한 건당 14,208원 손실(요금 24.8% 인상 요인 존재)
 - 견인 한 건당 비용은 57,222원, 수입은 43,014원
- 원가 산정 결과에 따라 전반적 요금수준 25% 인상 필요

[표 5-6] 견인운송원가 산정 결과

	항목	2013 회계 결산 기준	기준 원가	수정 원가	산출 내역
비용 내	역				
	연료비	6,677	5,569	5,569	운행 거리/연비x연료단가
	유지보수비	1,776	1,776	1,776	현행 원가 적용
취라니	감가상각비	1,564	3,407	3,407	(차량가격X 0.9)/7년/365/5.37회
차량비	주차비	1,311	1,311	1,311	현행 원가 적용
	차량보험료	2,457	2,457	2,457	현행 원가 적용
	소계	13,785	14,520	14,520	-
	운전직	18,517	26,729	26,729	기본급/근무일수/5.37+평균견인수당
וון גל וס	관리직	5,541	5,349	5,349	(기본급+수당)/보유차량/근무일수/5.37
인건비	퇴직급여	-	2,673	_	-
	소계	24,058	34,751	32,078	-
	복리후생비	3,532	4,865	4,491	인건비의 14% 적용
	사무관리비	811	811	811	현행 원가 적용
일반	수도광열비	115	115	115	현행 원가 적용
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1,295	1,295	1,295	현행 원가 적용
	기타 경비	3,912	3,912	3,912	현행 원가 적용
	소계	9,665	10,998	10,624	-
フ	타비용	1,026	1,507	_	기본 이윤 = 원가의 2.5%
	계(A)	48,533	61,776	57,222	_
수입 내	역				
 견	인 수입	41,520	41,520	41,520	현행수입
フ	타 수입	1,494	1,494	1,494	-
	계(B)	43,014	43,014	43,014	-
	! 한 건당 :I(C=B-A)	-5,519 (88.63%)	-18,762 (69.63%)	-14,208 (75.17%)	현행회계기준 11.37%, 기준원가기준 30.37%, 수정원가기준 24.83% 인상 요인 존재

3. 보관원가 요소별 산정 내역

- O 요소별 보관원가 산정방법
 - 보관원가는 23개 보관소 중 회계자료를 제출한 20개 보관소(종로, 금천, 홍제 제외)의 2013년도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 보관원가는 토지에 대한 기회원가 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요금 수준이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현금 지출원가의 57.5%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건비, 일반 관리비 및 기타 원가의 현금 지출액으로 산정함
 - 보관 원가는 보관소 1면의 시간당 요율과 비교하기 위하여 보관소의 총원가 를 보유중인 보관 면에 대한 1시간 원가를 산정함
- 보관소의 총 보관가능면수 대비 실제 보관률은 8.4%로 나타남

[표 5-7] 보관소 보관실적

구분	20개 전체	평균	비고
보관 면수	1,454	72.7	
1일 보관 차량 대수	687	34.4	
1일보관가능 시간x대	34,896	1,745	24시간
실보관 시간x대	2,923	148	평균 4.3 시간
실보관률	8.4%	8.4%	

O 인건비

-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지출액의 보관 의 업체 별 연간 집행액 평균액을 1일 평균 원가를 구하여 보관소 보유 면당 1시간의 원가(1일 원가의 1/24)를 산정 하였음
- 20개 보관소의 인력 운영 실태 및 인건비 집행액의 평균치는 다음과 같으며 퇴직급여는 역시 현행 요율 수준이 너무 낮아 추가 원가반영을 생략함

[표 5-8] 보관소 인건비

	1인평	균 월 인건비	(원)	超그 이의	월평균	일 평균
구 분	기본급	수당	합계	평균 인원	근무일수	근무시간
정규직	1,349,779	626,582	1,976,361	4	19	9
비정규직	738,219	481,362	1,219,580	4	14	7
 합 계	_	_	_	8	-	_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 수도 광열비, 지급임차료 및 기타 비용으로 구성됨
- 일반관리비 현행 집행 실적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정함

4. 보관원가 산정 결과

- O 보관소 1면의 1시간당 비용은 390원, 수입은 225원
 - 현재 보관소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음
 - 보관소의 적자 보전을 위한 시간당 정상요율은 4,660원(현 요금의 3.3배)
 - 순 보관율을 20% 적용 시 1,952원(약 40% 인상 요인)
- 현재 30분당 700원에서 1,000원으로 300원(42.9%) 인상

[표 5-9] 보관원가 산정 결과

	항목	총원가(천원)	평균원가(천원)	일평균(원)	보관 면당 시간 원가(원/시)
비용 내	역				
Ç	인건비	3,169,345	158,467	434,157	249
	복리후생비	470,446	23,522	64,445	37
	사무관리비	197,530	9,877	27,059	16
일반	수도광열비	149,366	7,468	20,461	12
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295,626	14,781	40,497	23
	기타 경비	619,190	30,960	84,821	49
	소계	1,732,158	86,608	237,282	136
기	타 비용	70,465	3,523	9,653	6
	계	4,971,968	248,598	681,092	390
수입 내	역				
보	관 수입	1,606,450	80,323	220,062	126
기	타 수입	1,254,160	62,708	171,803	98
	계	2,860,610	143,031	391,864	225
수지 내	역				
	수지	-2,111,358	-105,568	-289,227	-166
4	우지 율	0.575	0.575	0.575	0.575
정상요율	울 분석				
보곤	· 원가율	3.10	3.10	3.10	3.10
보	.관규모	1,454	72.7	72.7	
일평균	· 보관대수	687	34.4	34.4	
<u> </u>	보관율	0.472	0.472	0.472	
 평균	보관시간	4.3	4.3	4.3	
- 1일 보관	·대수 및 시간	2,923	146	146	
1일 보관	가능 대수X시간	34,896	1,745	1,745	
순	보관율	0.084	0.084	0.084	
정상요	2율(시간당)				4,660
순보관율	· 20% 적용시				1,952

- 1. 현재 견인 및 보관체계 문제점
- 2. 견인요금 개선방향
- 3. 견인요금 개선방안
- 4. 보관요금 개선방안

제VI장 견인 및 보관요금 개선방안

1. 현재 견인 및 보관체계 문제점

- O 견인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
 -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속한 견인조치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단속효과 기대 가능
 - 그러나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견인율 저조한 상황
 - 현재 과태료 단속 또는 과태료 및 견인 단속의 발부조건은 단속자의 판단에 따름
 - 지자체별 단속성향에 따라 견인실적 편차가 큼
- O 고급차량 및 중대형차량 견인 기피
 - 견인업체 측에서는 고급차 견인의 어려움 호소하나, 현재 견인요금은 승용차 종에 관계없이 동일
 - 고급 또는 외제차량의 경우 소형차에 비해 고난도의 견인방법 필요
 - 견인을 위한 준비시간이 길어. 그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 차량 파손시 손해배상 책임 부담
- O 차별적인 견인행태로 인한 형평성 저해
 - 견인이 비교적 용이한 경소형차 위주로 견인을 하는 경향
 - 차종에 따른 차별적 견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증대
- O 장기간 견인 및 보관요금 동결로 인한 업계의 영업환경 악화
 - 단속 및 견인실적 저하
 - 업계의 수익성 악화
 - 견인차량 및 인원 등 규모 축소
 - 신속한 견인업무에 차질

2. 견인요금 개선방향

- O 견인사업여건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요금 25% 인상
 - 대중교통 요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5년 동안 5회 인상(1999년 450원에서 2014년 1,050원으로 2.3배 인상)
 - 1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55.8%
 - 견인원가 산정 결과 견인사업 유지 위해 현 요금수준의 25% 인상 요인 존재
- O 견인요금 개선방안을 배기량별 차등요금 부과방식 또는 견인된 지점에 따른 추가요금 부과방식으로 구분하여 제시
- O 배기량별 차등요금 부과방식
 - 승용차 및 승합차는 화물차와는 별도로 배기량별 차등요금 부과
 - 승용차는 배기량 등급에 따라 차등요금 부과
 - 승합차는 서민생계 이용목적과 높은 운송효율을 고려하여 소형 승용차 등급에 준함
 - 화물차는 톤별 요금체계 기준을 유지하되. 요금 25% 인상
 - 고급차량에 대한 높은 견인요금 책정
 - 견인 소요시간 및 고중량차 견인에 따른 추가유류비. 사고발생시 보상금액 고려
 - 자동차세 부과기준과 같이 배기량 cc당 단가 적용 고려
 -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등 세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 여 각 등급별로 cc당 세액을 80원, 140원, 200원 적용 중
- O 견인된 지점에 따른 추가요금 부과방식
 - 톤별 요금방식인 현재의 견인요금체계를 유지하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견인 된 지점에 따라 추가요금 부과
 - 보도 위 주차,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버스전용차로 주차 등 신속한 견인조치가 필요한 지점에서 견인시 추가요금 부과

3. 견인요금 개선방안

가. 배기량별 차등요금 부과방식

1) 화물차 견인요금

- O 화물차 견인요금은 전반적으로 25% 인상
 - 단, 2.5톤 미만 화물차는 서민생계형 이용목적을 감안하여 현요금 유지
 - 1톤 이하 화물차 158,232대 중 자가용 138,513대, 영업용 18,621대
 - 3톤 이하 화물차 23,535대 중 자가용 17,422대, 영업용 5,933대
 - 소형 화물차는 주로 생계형 자영업자나 농업종사자 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 단으로 사용 중

[표 6-1] 화물차 견인요금 변경안

(단위 : 원)

구분	기존	변경
2.5톤 미만	40,000	40,000
2.5톤 [~] 6.5톤	46,000	60,000
6.5톤 [~] 10톤	66,000	80,000
 10톤 이상	115,000	140,000

2) 승용차 및 승합차 견인요금

- O 승용차 배기량별 등급기준
 - 승용차 배기량 등급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준용
 - 단 고급형은 장애인연금제도 기준 준용
 - 전기차는 동일한 차종의 등급으로 적용(예시. SM3 Z.E.는 SM3의 등급인 소형)

승용차 등급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소형 : 배기량 1600cc 미만,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 고급형 :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고급형은 장애인연금제도 기준 준용

O 승용차 등급별 차등요금 부과 근거

- 경형차량 할인요인
 - 짧은 견인 소요시간(언더리프트 장착시간 3~4분 소요, 견인속도 50~60km/h)
 - 저중량(약 950kg)으로 유류소비량 적음
 -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액 저렴(50만 원 미만, 보통 합의금 지급)
- 고급형차량 할증요인
 - 긴 견인 소요시간(소형보조바퀴 장착시간 8~9분 소요. 견인속도 30~40km/h)
 - 고중량(약 1,900kg)으로 유류소비량 큼
 -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액 큼(실제 국산 1백~3백만 원, 외산 1천만 원대까지 보험 금 지급)



[언더리프트 장착, 2바퀴 견인]



[소형보조바퀴 장착, 4바퀴 견인]

<그림 6-1> 견인방법 예시

- O 서민생계형 승합차는 생계이용목적과 높은 운송효율을 고려하여 소 형 요금에 준함
 - 자동차세 인상 대상에서 서민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 제외(2014년 지방세 제 개편방안)

제 Ⅵ 장 견인 및 보관요금 개선방안

- O 장애인차량은 거동의 불편함으로 인한 불가피한 주·정차를 고려하여 경형 요금에 준함
 - 장애등급 1~3급, 2,000cc 미만의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자동차세 감 면대상 준용)
- O 승용차 견인요금 적용방안 및 평가

- 대안1

• 방법 : 원가 산정을 기준으로 요금인상 요인만큼 차종·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률 적 요금 인상

[표 6-2]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1

(단위 : 원)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고급형
	(1000cc 미만)	(1600cc 미만)	(2000cc 미만)	(3000cc 미만)	(3000cc 이상)
대 안1			50,000		

• 장단점

[표 6-3]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1 장단점

(단위 : 원)

장점	단점
• 수납 가장 용이(배기량 확인 불필요)	• 고급차 견인 부담 유지되어 차종에 따른 차
• 견인요금 부과기준 단순	벌적 견인행태 지속됨으로써 형평성 저해

- 대안2

• 방법 : 전반적 요금 인상 및 경형 요금 유지(차종별 등급표 배포)

• 경형 요금 유지 : 유료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경차 50% 할인율 적용

[표 6-4]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2

(단위 : 원)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고급형
	(1000cc 미만)	(1600cc 미만)	(2000cc 미만)	(3000cc 미만)	(3000cc 이상)
대 안2	40,000	50,000			

• 장단점

[표 6-5]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2 장단점

(단위 : 원)

장점	단점
 수납 용이(육안으로 경차 구분 가능) 현 수납시스템에서 즉시 적용 가능 경차 요금 유지로 견인요금 인상에 대한 민원 제기 가능성 감소 	 65세 이상 노인층이 요금부과 관련 업무 담당시 현장에서 육안으로 차종 구분 어려움 (차종별 배기량등급표 제시해주어도 확인 어려움) 고급차 견인시 견인업체 측의 부담 유지 경형 외 차종의 요금이 동일하여 형평성 낮음

- 대안3

- 방법 : 전반적 요금 인상 및 경형 요금 유지·고급형 할증(차종별 등급표 배포
- 경형 요금 유지 : 유료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경차 50% 할인율 적용
- 고급형 할증률 50% 적용 : 고급차 견인은 소형보조바퀴를 이용한 견인방식을 사용하며, 기본적인 언더리프트 방식에 비해 견인 소요시간 50% 이상 필요

[표 6-6]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3

(단위 : 원)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고급형
	(1000cc 미만)	(1600cc 미만)	(2000cc 미만)	(3000cc 미만)	(3000cc 이상)
대 안3	40,000	50,000		75,000	

• 장단점

[표 6-7]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3 장단점

(단위 : 원)

장점	단점
• 견인요금의 형평성 제고 • 고급차 견인에 대한 견인업체의 부담 감소	65세 이상 노인층이 요금부과 관련 업무 담당시 현장에서 육안으로 차종 구분 어려움(차종별 배기량등급표 제시해주어도 확인어려움) 육안으로 배기량 구분이 어려운 경우 하위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예상되어 불가함 소형·중형·대형 승용차의 요금은 동일하므로 소형과 대형 간 형평성은 낮음

- 대안4

• 방법 : 차종별 견인요금 형평성 확보 위해 기준 세분화(배기량등급별 단계적 할증) [표 6-8]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4

(단위 : 원)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고급형
	(1000cc 미만)	(1600cc 미만)	(2000cc 미만)	(3000cc 미만)	(3000cc 이상)
대 안3	40,000	50,000	60,000	70,000	75,000

• 장단점

[표 6-9]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4 장단점

(단위 : 원)

장점	단점
배기량별 등급 세분화로 모든 등급 간 형 평성 제고고급차 견인에 대한 견인업체의 부담 감소	 현 수납시스템은 피견인차량의 배기량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즉시 적용 불가 높은 요금인상폭(약 50%)으로 시민들의 반발 가능성 존재

- 대안5

• 방법 : 원가 산정 기준 배기량 cc당 단가 적용

[표 6-10]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5

(단위 : 원)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고급형	
	(1000cc 미만)	(1600cc 미만)	(2000cc 미만)	(3000cc 미만)	(3000cc 이상)	
- 대 안5		25원/cc				
(예시)1)	(24,000)	(39,000)	(49,000)	(58,000)	(83,000)	
	1.0	1.6	2.0	2.4	3.3	

주1) 대안5 차량 예시 : 998cc(모닝), 1591cc(아반떼), 1998cc(K5), 2359cc(그랜저), 3342cc(제네시스) *천 원 미만 절사

• 장단점

[표 6-11]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5 장단점

(단위 : 원)

	(EII · E)
장점	단점
•배기량에 비례한 요금부과로 등급 간 형 평성 가장 좋음 •고급차 견인에 대한 부담 최소화 가능	 현 수납시스템은 피견인차량의 배기량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즉시 적용 불가 개인정보 보호 가능한 배기량 조회시스템구축 필요

- 자동차세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동차세의 cc당 단가는 경형 80원/cc, 소형 140원/cc, 그 외 200원/cc
 - 자동차세의 등급별 할증률은 대안5보다 두 배 이상 큼

[표 6-12] 배기량별 자동차세 예시

(단위 : 원)

구분	경형 (1000cc 미만)	소형 (1600cc 미만)	중형 (2000cc 미만)	고급형 (3000cc 이상)	
자동차세 (예시) ¹⁾	80원/cc	140원/cc	200원/cc		
	(79,840)	(222,740)	(399,600)	(471,800)	(668,400)
	1.0	1.8	4.0 4.9		7.4

주1) 대안5 차량 예시 : 998cc(모닝), 1591cc(아반떼), 1998cc(K5), 2359cc(그랜저), 3342cc(제네시스) *천 원 미만 절사

O 대안 평가표

[표 6-13]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 평가표

구분	O그 저유비배	형평성	요금의 단순성	적용 가능성	
	요금 적용방법	90 70		현 수납시스템	배기량 조회 시스템 구축시
대 안1	요금 25% 인상	X	0	0	0
대 안2	요금 30% 인상 (경형 50% 할인)	Δ	0	0	0
대 안3	요금 20% 인상 (경형 50% 할인 및 고급형 50% 할증)	Δ	0	Δ	0
대 안4	소형 요금 동결 (각 등급별 할인 또는 할증)	0	Δ	X	0
대 안5	배기량 cc당 단가 적용 (요금 = 개별차량의 배기량 × 단가)	0	X	X	0

O 각 대안별 업체당 1일 견인수입 변화 추정

- 조사기간(2014년 10월 20일~11월 2일) 내 피견인차량 입고자료 기준
- 향후 실적 유지 가정

[표 6-14] 승용차 견인요금 대안별 견인수입 변화 추정

(단위 : 대, 원/일/업체)

구분	경형 (1000cc 미민)	소형 (1600cc 미민)	중형 (2000x: 미민)	대형 (3000호 미민)	고급형 (3000호 이심)	승합	전체 (증감률)
견인실적	469	876	1,728	1,217	368	188	4,846
현 수입	78,824	147,227	290,420	204,538	61,849	31,597	814,454
대 안1	98,529	184,034	363,025	255,672	77,311	39,496	1,018,067 (125.0%)
대 안2	78,824	184,034	363,025	255,672	77,311	39,496	998,361 (122.6%)
대 안3	78,824	184,034	363,025	255,672	115,966	39,496	1,037,017 (127.3%)
대 안4	78,824	184,034	435,630	357,941	123,697	39,496	1,219,622 (149.7%)
대 안5 ¹⁾	49,166	146,399	362,662	301,565	129,187	34,517	1,023,496 (125.7%)

주1) 대안5 차량 예시 : 998cc(모닝), 1591cc(아반떼), 1998cc(K5), 2359cc(그랜저), 3342cc(제네시스)

O 향후 견인수입 추정

- 자동차 배기량별 등록대수 연증감률
 - 통계청의 소형차 단위는 1500cc 미만으로 대안의 요금체계와 상이
 - 단 준중형차의 배기량이 2006년 이전 1,495cc급에서 이후 1,591cc급으로 변함에 따라 통계상 소형은 감소하고 중형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소형과 중형의 정확한 분류가 불가하므로 현재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표 6-15] 승용차 배기량등급별 연평균 등록대수 증감률

(단위 : 대)

구분	1000호 미만	1500호 미만	2000호 미만	3000ጩ 미만	3000℃ 이상	승합
연평균 증감대수 (비율)	7,154 (4.3%)	-45,381 (-20.3%)	44,606 (3.3%)	15,647 (2.7%)	12,596 (6.9%)	-7,038 (-5.5%)

주) 최근 $10년(2004년\sim2014년~11월)$ 간 자동차 배기량별 등록대수 연평균 증감률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자동차 등록현황

- 향후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대수 추정

[표 6-16] 향후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대수 추정

(단위 : 대)

구분	경형 (1000cc 미만)	소형 (1600cc 미만)	중형 (2000호 미만)	대형 (3000cc 미만)	고급형 (3000☎ 이상)	승합	전체
현재 ¹⁾	164,609	223,714	1,356,076	580,758	183,318	128,071	2,636,546
2년 후	178,916	223,714	1,356,076	612,053	208,510	113,994	2,693,263
5년 후	200,377	223,714	1,356,076	658,995	246,299	92,880	2,778,340
10년 후	236,144	223,714	1,356,076	737,231	309,280	57,688	2,920,133

주1) 현재는 2014년 11월 기준

- 향후 견인실적 추정

• 향후 견인실적은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함(현재의 견인률 유지 가정) 식1) 등급별 견인률 = 현재 견인실적 / 현재 등록대수 식2) 향후 견인실적 = 등급별 견인률 × 향후 등록대수

[표 6-17] 향후 견인실적 추정

(단위 : 대)

구분	경형 (1000cc 미민)	소형 (1600cc 미만)	중형 (2000호 미만)	대형 (3000ⓒ 미만)	고급형 (3000☎ 이상)	승합	전체
현재	469	876	1,728	1,217	368	188	4,846
2년 후	510	876	1,728	1,283	419	167	4,982
5년 후	571	876	1,728	1,381	494	136	5,187
10년 후	673	876	1,728	1,545	621	85	5,527

- 대안별 향후 견인수입 및 증가율
 - 고급형 할증을 적용할 경우(대안3~대안5), 고급차량증가에 따라 견인수입 증대 효과 큼

[표 6-18] 대안별 향후 견인수입 및 증가율

(단위 : 원/일/업체)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현재	1,018,067	998,361	1,037,017	1,219,622	1,023,496
	(125.0%)	(122.6%)	(127.3%)	(149.7%)	(125.7%)
2년 후	1,046,691	1,025,273	1,069,240	1,258,419	1,057,979
	(128.5%)	(125.9%)	(131.3%)	(154.5%)	(129.9%)
5년 후	1,089,628	1,065,640	1,117,576	1,316,614	1,109,704
	(133.8%)	(130.8%)	(137.2%)	(161.7%)	(136.3%)
10년 후	1,161,188	1,132,918	1,198,135	1,413,606	1,195,911
	(142.6%)	(139.1%)	(147.1%)	(173.6%)	(146.8%)

- O 승용차 견인요금 총괄평가
 - 견인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견인실적이 낮은 것이며, 실적이 증가하면 요금 인상 불필요
 - 현재 견인차량 1대당 견인실적 5.37건에서 6.71건으로 약 25% 증가할 경우 견인 업체 적자 보전 가능(서울시내 견인실적, 현재 520건/일에서 650건/일로 증가)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견인실적 반영시 실적 증가 기대 가능
 - 현재 견인실적은 하향추세에 있으며 견인단속 강화정책 외에는 향후 실적증가 기대 어려워 요금 인상 필요
 - '대안2'와 '대안3'은 요금체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형평성은 낮음
 - 요금체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수납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차종 등급표를 배포함으로써 육안으로 배기량별 견인요금 부과하는 방법이지만 실제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연령층이 높아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움
 - 또한 차종에 따른 견인요금의 형평성 문제 지속 가능
 - 형평성 있는 요금체계는 '대안4'나 '대안5'이며, 시행 위해서는 배기량 조회시 스템 구축 필요
 - 배기량 등급의 세분화로 등급 간 견인 형평성 제고 가능
 -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기량 조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차량조 회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보관소의 민간인은 접근이 불가능함
 -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배기량을 조회할 수 있는 수납시스템 구축 필요

(예시.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단속시 차종별 배기량 조회후 해당 견인요금을 단속 스티커에 표기)

나. 견인된 지점에 따른 추가요금 부과방식

O 기존의 견인요금체계 유지

[표 6-19] 견인된 지점에 따른 추가요금 부과방식의 견인요금체계

(단위 : 원)

구분	2.5톤 미만	2.5톤~6.5톤	6.5톤~10톤	10톤 이상
견인요금	40,000	46,000	66,000	115,000

O 추가요금 부과

- 교통흐름이나 보행안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특정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1만 원의 추가요금 부과
 - 횡단보도, 교차로(10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보도(인도)를 2/3 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CCTV 단속이나 견인을 회피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행할 경우 2만 원의 추가 요금 부과
 - 차량의 번호판이 노출되지 않도록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 차량을 주변의 고정 시설물에 쇠사슬로 묶어 견인을 못 하도록 하는 행위
- 차량의 모든 바퀴가 고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소형보조바퀴를 이용해야 할 경우 견인소요시간을 고려하여 2만 원의 추가요금 부과
- 견인요금은 일반적으로 4만 원이며, 만약 모든 추가요금이 더해지면 최대 9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

4. 보관요금 개선방안

- O 한도 적용방법별 장단점
 - 1회 한도(현재 서울시 적용)
 - 1회 한도 도달(현재 50만 원) 전까지 보관시간에 비례하여 보관요금 징수 가능
 - 피견인차량 소유주의 요금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1일 한도
 - 1일 한도 적용시. 장시간 보관된 피견인차량 소유주의 불만과 민원 감소
 - 장시간 보관차량에 대한 보관수입 또한 감소(전체 보관수입의 약 1% 감소)의

[표 6-20] 보관요금 한도 적용방법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1회 한도	• 보관시간에 비례한 보관요금 징수	• 피견인차량 소유주 부담 비교적 큼
1일 한도	• 피견인차량 소유주의 불만(민원) 감소	• 보관수입 소폭 감소 • 형평성 저해 가능

- O 보관요금 1일 한도 설정시 형평성 저해 가능
 - 만약 1일 10시간을 한도로 설정할 경우 10시간 동안 보관한 차량과 24시간 보관한 차량의 보관요금 동일
 - 견인 보관요금은 주차요금과는 달리 범칙금적 성격을 가지므로 보관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함이 합당함
- 오 보관원가 산정 결과 보관소 적자 보전 위해서는 보관요금 1.74배 인상 필요
 - 현재 실보관률 8.4%(총 보관 가능면수 1,454면, 시간당 실보관대수 약 122대)
 - 총 23개 보관소 중 회계자료를 제출한 20개 보관소의 2013년도 집행실적 기준으로 산정

²⁾ 조사기간(2014년 10월 20일~11월 2일) 내 보관소에 입고된 차량의 보관시간 분석 통해 보관수입 감소폭 산정

- 보관 1면당 시간당 비용은 390원, 수익은 기타 수입 98원 포함 225원으로 58% 수준으로 적자 상태
 - 보관소 평균 비용은 2억4,860만 원, 수익은 기타 수입 포함 1억4,303만 원
- 보관 원가를 완전 보전하기 위한 요금은 30분당 2,330원으로 현재 700원의 3.3배
- 그러나 기타 수입을 고려하면 1,220원 수준으로 74% 인상 필요
- O 보관소는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적자 보전보다는 주차요금과의 대응 필요
 - 현재 보관요금은 30분당 700원으로 공영 노상주차장의 4급지(10분당 200원) 보다 16.7% 높고, 3급지(10분당 300원)보다 22.2% 낮은 수준
 - 실제 피견인차량 견인지점의 급지별 보관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 안이지만, 단속 여건을 고려하여 급지별 보관요금 미적용
 - 단 보관요금은 일반적인 주차요금 수준보다는 높게 설정하는 것이 합당함
 - 주차장 급지 구분에서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지역의 주차장은 3급지로 판단 가능

주차장 급지 구분(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 1급지 : 4대문 주변지역, 신촌지역, 영등포지역, 강남·서초지역, 잠실지역, 천호지역, 청량리지역, 용산·마포지역, 미아지역, 목동지역 중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제외)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
-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
- 5급지 :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O 서울시내 주차요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관요금 약 43% 인상
 - 6.5톤 미만 : 30분당 1,000원(3급지 공영주차장 대비 11.1% 높은 수준)
 - 6.5톤 이상 : 30분당 1,700원
 - 1회 한도 : 700,000원(입고 후 14일 14시간 경과시)

제/ 장 정책제언

- 1.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객만화·일원화 필요
- 2. 견인요금 부과방법 개선
- 3. 견인대상차량 위치정보 전송 의무화
- 4. 견인업체 평가 및 제재방안
- 조인작업 중 차량소유자 의사로 작업 5. 중단시 견인요금 부과
- 6. 이륜차 견인정책 도입 검토

제VII장 정책제언

1. 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 객관화ㆍ일원화 필요

- 현재 과태료 부과 스티커와 과태료 및 견인대상차 스티커 발부조건 동일
 - 견인대상차 스티커의 객관적인 발부조건 정립 필요
 - 현재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적용 중
 -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 기
 준 또한 동법의 동일한 위반
 사항을 적용 중
 - 따라서 단속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교통에 심하게 방해가 될 경우에만 견인단속 중
 - 견인지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은 반드시 견인토록 하는 등의 단속기준 필요
 - 단속자의 주관적 판단 배제 가능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

No. 2014- 18947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 통보되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의견진술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의견진술 방법 뒷면 참조) **과태료 납부한 경우** 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 등 모든 절차 종료**
-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뒷면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 견인료(40,000원) 및 보관료(30분당 700원)는 전인보관소에 납부하는 견인료는 과태료와 별도입니다.

견인보관소:송파구 탄천동로 690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교각밑)

우	반 사항(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단속사항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인도)에 주·정차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주·정차	
4	버스정류소를 표시하는 기둥, 판 또는 선에서 10m 이내 주·정차	
5	건널목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2
6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7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주차	
8	소방용 기계, 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 이내 주차	
9	도로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주차	
10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의 주·정차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	
11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12	주차의 방법과 시간 제한사항 위반한 주차	
13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및 의견진술 문의 : 월 ~ 금(09:00~18:00) ☎ 02-214	7-3192, FAX 02-2147-3889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송 파 구 청

차량소유자 귀하

- 견인에 대한 민원 소지 불식 가능
- O 형평성 제고 위해 25개 자치구의 일원화된 단속기준 정립 필요
 - 명확한 과태료 및 견인대상차 단속기준을 선정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 교통혼잡 유발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단, 견인지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 스티커를 발부·단속하도록 하는 조항 추가 필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구청장이 직접 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수 있다.
 - 1. 경찰공무워
-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2. 견인요금 부과방법 개선

- O 견인요금 부과방법 개선의 필요성
 - 견인정책의 형평성 제고 위한 배기량조회 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의 단속 및 견인시스템에서는 배기량 조회 불가
 - 보관소 수납시(민간)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배기량 조회 불가
- O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활용 필요
 - 기존에는 PDA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수행
 - 그러나 현재 서울시 및 마포구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 중(강동구 개발 중)



[메인화면1]



[입력화면1]



[메인화면2]



[입력화면2]

<그림 7-2>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폰 앱 화면

- 불법 주정차 단속 앱 제공서비스
 -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단속장소 자동검색(세부지점 수동 입력 가능)
 - 단속조·단속일시·차량번호·단속장소·위반내용 등 단속 관련 정보 입력
 - 단속스티커 인쇄 기능(모바일 프린터 이용)
 - 데이터센터와 단속 관련 자료 송수신 기능

- O 현재 단속 앱 활용의 한계
 - 배기량 조회기능 부재
 - 스마트폰 구입 및 앱(유료) 구입 필요하여 자치구 예산 확보 어려움
 - 스마트폰 약정계약시 단말기 및 통신비 매월 약 5만 원 소요
 - 단속 앱 구입비 단말기당 약 50만 원 소요
- O 개선방안
 - 1. 배기량 조회기능 추가
 - 불법 주정차 단속시 배기량 조회 및 견인요금 산출 기능 추가
 - 향후 배기량별 차등요금 부과를 위해 배기량 조회시스템 필요
 - 그러나 민간은 개인정보 접근이 불가하여 보관소에서 배기량 조회 어려운 상황
 - 앱을 이용하여 단속시 데이터센터로부터 차량등록원부 배기량 조회 및 배기량에 따른 견인요금 자동계산기능 추가
 - 앱을 이용한 단속스티커 내에 피견인차량 배기량에 따른 견인요금 항목 추가
 - 보관소 수납업무 담당자의 연령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견인요금 징수 가능
 - 추가적인 차량등록원부 조회 불필요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음
 - 2.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앱 활용시 필요재원 확보방안
 - 앱 활용 필요예산
 - 단속용 스마트폰 단말기 이용료
 - : 연 1억8백만 원(단말기180개×5만 원×12개월)
 - 불법주정차 단속 앱 구입비
 - : 구입시 9천만 원(단말기180개×50만 원)
 - 견인요금 인상액의 일정부분 활용
 - 견인 1건당 1천 원씩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재원으로 활용
 - 견인요금 수납 후 구청의 주차장 특별회계 항목으로 재원 확보
 - 2013년 견인건수 118,494건 기준, 연 1억1,849만 원 확보 가능(약 3년 초과시 필

요예산 충당 가능)

- 일본 동경택시센터의 경우 택시 1회 영업당 1엔씩 확보하여 센터 운영비로 사용 중
- 견인요금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재원 활용 위한 조례 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의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을 소 요비용으로써 징수 가능함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함
 - 단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대행비용 지급사항에서 단속활동 재원(견인 1건당 1천원)을 제외한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 필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징수)

-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이 월 2회 지급한다.

3. 견인대상차량 위치정보 전송 의무화

- O 견인대상차량 위치정보 전송의 필요성
 - 견인업무의 비효율성
 - 견인차량이 주요지점을 순회하며 견인스티커 부착차량 발견시 견인 수행
 - 견인의 신속성 저하
 -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을 단속하더라도 견인차량이 발견할 때까지 방치
- O 위치정보 전송 사례
 - 2009년 8월, 견인우선대상차량 지정하여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정책 시행
 - 교통소통 장애 및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 및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즉시 견인
 - 2012년 8월, 보도블럭 위의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조치 시행
 - 동·서·남·북부, 성동, 강서 등 6개 지역구에 233명의 전문단속요원과 CCTV, 카메라 장착차 8대를 포함한 25대의 단속차 동원



[보도와 차도 주차]



[보도 위 주차 적발]

<그림 7-3> 보도 위 불법 주차차량 단속 사진

- O 실행의 한계점
 - 견인차량이 단속원의 이동경로를 따라다니며 단속 직후 견인해가는 사례 발생
 - 이에 대해 시민들은 단속원과 견인업체의 유착관계로 오인하여 민원 발생

- O 견인대상차량 위치정보 전송제도 도입방안
 - 신속한 견인조치가 필요한 특정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 견인업체에 대상차량 위치정보 전송 의무화

견인대상차량 위치 제공 대상

- 1.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왕복 4차선 이상 도로)
- 2. 횡단보도, 교차로(10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 3.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4. 보도(인도)를 2/3 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5.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

4. 견인업체 평가 및 제재방안

- O 견인업체 평가의 필요성
 - 현재 대부분 견인업체는 대행법인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장기간 기한없이 경영 중에 있음
 - 그러나 견인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의 부재로 고급차 견인 기피 등 문제 발생시에 도 대책 부재
 - 향후 견인업체 평가를 시행하여 일정 점수 이하의 업체는 대행법인 지정을 취소 하거나 대행업무 정지조치 필요
 - 배기량별 견인요금체계 도입 및 견인대상차량 단속정보 제공 시행시, 견인업 무의 효율성 및 형평성 증대 가능
 - → 견인업체에 대해서도 제재수단 확보위해 평가를 함으로써 견인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 확보 필요

○ 근거 법령

- 불성실 견인업체에 대한 조치명령 및 면허취소 등 제재 가능(도로교통법 시 행령 제17조)
 - 경찰서장이나 서울시장은 견인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행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구청장이 직접 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O 견인업체 평가 및 제재방안

- 평가항목은 견인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을 선정
 - 견인대상차량 중 실제 견인비율, 배기량 등급별 견인률 등
- 자치구에서 관할지역 내 견인업체를 평가하며 매년 평가를 통해 견인사업의 선진화 유도
- 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하의 견인업체는 대행법인 지정 취소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 정지명령

5. 견인작업 중 차량소유자 의사로 작업중단시 견인요금 부과

- O 블랙박스의 기술발전과 설치차량의 증가로 견인업무 어려움 확대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PC에 영상을 전송해주는 블랙박스 개발
 - 주차 중 차량 충격 뿐만 아니라 도난이나 견인이 감지될 경우 문자(SMS) 전송
 - 견인작업 중 차량 소유자가 블랙박스를 통해 연락을 받고 작업을 중지하는 사례 발생
 - 블랙박스 설치차량이 증가할수록 견인작업 중 중단사례 증가 예상
- O IT기술 발전(블랙박스 견인 알림메세지 등)에 따라 견인업무의 비효 율성이 증대되고 있어 작업중단시 견인요금 부과 검토 필요
 - 견인차량의 유류비 및 견인작업에 따른 노동력과 시간을 고려, 견인요금의 일부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언더리프트 또는 소형보조바퀴 장착 후 차량소유자 나타나 장착해제를 요구할 경우 일정요금 부과
 - 그러나 현행법의 개정 필요(「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의 사용자 부담비용에 견 인작업 비용 포함)

「도로교통법 」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 향후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견인업체 관계자 의견 수렴 통해 작업중단시 견인요 금 적정금액 설정
 -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지원은 가능
 - 중구에서 견인작업 중 차량소유자 의사로 작업중단시 견인업체에 견인요금을 지원하였음(현재는 지원하지 않음)

6. 이륜차 견인정책 도입 검토

- O 이륜차 주차장 및 견인정책 필요성
 - 보행자 안전 확보 위해 이륜차 주차장 확대 필요
 - 이륜차는 운전·보행 중 가장 큰 사고 위험요소(2015년 교통안전의식 설문조사, 매일경제신문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이륜차와 보행자 간 사고 중 보도통행 중 사고 12.0%

[표 7-1] 이륜차와 보행자 간 사고 현황

구분	횡단중	보도통행중	차도통행중	길가장자리 구역통행중	전체	
발생건수(건)	941 (70.8%)	159 (12.0%)	139 (10.5%)	90 (6.8%)	1,329 (100%)	
사망자수(명)	13	4	1	6	24	
부상자수(명)	1,065	179	152	99	1,495	

자료) 사고유형별 1당사자 차종별 교통사고(2013년, 전국), 국가통계포털

- 이륜차의 보도 위 주차문제 해결 위해 견인정책 도입 필요
 - 이륜차를 보도 위에 주차함에 따라 보행공간 축소 및 사고위험에 노출
- O 이륜차 등록(신고)현황
 - 2014년 12월 기준 이륜차 등록(신고)대수는 456,646대(미신고 이륜차 다수 존 재 가능)
 - 이륜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 차 번호 지정을 받아야 함(자동차관리법 제48조)
 - 단 경형이륜차는 2011년까지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2012년 1월부터 신고제로 변경(그러나 상당수는 현재에도 무신고로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7-2] 서울시 이륜차 등록(신고) 현황(2014년)

(단위 : 대)

구분	경형 (50cc 미만)	소형 (100cc 이하)	중형 (260cc 이하)	대형 (260cc 초과)	전체	
이륜차대수	26,687	164,151	246,782	19,026	456,646	

O 이륜차 주차장현황

-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이륜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가능(주차장법 제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주차장법 제6조의2)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현재 생계형 이류차 밀집지역 대상 이류차 전용주차장 설치(총 270면)
 - 동대문 케레스타 주변(32면), 남대문시장 주변(32면), 남대문시장 외곽지역(48면), 남대문시장 주변(50면), 동대문종합시장 주변(54면), 영등포 롯데백화점 주변 외 (54면) 등 2013년까지 총 270면 설치





[완공 전]

[완공 후]

<그림 7-4> 이륜차 전용주차장 완공 전·후 사진

- 제반여건 불비, 이륜차의 특성상 불법 주·정차 문제 심각
 - 서울시 전역의 모든 이륜차를 감당할 만한 주차장 확보 불가
 - 문전 접근성이 중요한 이륜차 특성상 주차장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용률 저조





<그림 7-5> 이륜차 불법 주·정차 사례

O 이륜차 단속현황

- 이륜차의 보도 위 주행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청만 갖고 있어, 관할구청은 단속 불가
 - 보도상 주행 4만 원, 주·정차 위반 3만 원의 범칙금 부과(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93조(별표 8))
 -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운전자를 찾아야만 부과 가능하여 실질적인 이륜차 불 법 주·정차 단속은 불가한 상황
- 2014년 서울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이륜차 보도 위 주행은 1,820건, 주·정차 위 반은 334건으로 하루 1건 미만
 - 경찰청 입장
 - ① 이륜차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를 완비한 후 단속해야 함
 - ② 대부분 생계형 이용자들로, 단속시 하루 일당이 소진되는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단속 어려움

O 이륜차 주차장 확대 및 견인정책 도입의 한계

- 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
 - 접근성이 중요한 이륜차 특성을 고려할 때 소규모의 주차면이라도 가능한 많은 지점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부지확보가 어려움
 - 이륜차 주차면 확보를 위해 보도나 도로폭을 축소할 경우 교통 혼잡 야기 가능
 - 주차장 설치 인접상가와 상가측 상인회 반대로 추진 어려움

- 이륜차 견인정책 도입시 소상공인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
 - 이륜차 이용 배달업체는 대부분 배달의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지 주변 에 주차공간 없을 경우 불법 주차를 감행하게 됨
 - 불법 주차한 배달이륜차 견인시 견인요금과 범칙금 부과로 인해 영업의 수입이 감소하며, 견인된 차량을 배달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의 폭이 확대되는데 에 따른 민원 발생
 - ※ 배달업소 등록·허가시 이륜차 주차장 확보 의무화규정 필요하나, 신고제이기 때문에 의무화에 대한 근거가 없음(주차장 확보 권고 수준)
- 이륜차 견인 위한 제도적 문제
 - 미신고 이륜차 견인시 운전자 본인 확인방법 부재
 - 불법 주·정차 이륜차에 대한 관할구청의 단속권한 없음
 - 배달이륜차 주차시간이 10분 이내로 짧아 견인 대상 단속시에도 견인차량 도착 전에 이동할 가능성이 큼
 - 이륜차 견인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치(기중기) 도입 필요
- O 이륜차 견인정책 시행 위한 선결과제
 - 이륜차 견인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제도적 요인으로 시행 어려움
 -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 해결시 실시 가능
 - 서울시 전역에 이륜차 주차면 확보
 - 모든 이륜차 보안등록을 실시하여 차주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예시: 일본은 이륜차 구입시 보안등록 필수, 500엔의 등록수수료 징수)
 - 구청의 불법 주·정차 이륜차에 대한 단속 권한 확보

- O 일본의 이륜차 견인정책 사례
 - 일본은 이륜차나 자전거 등록제여서 체계적인 관리 가능
 - 일본은 이륜차 뿐만 아니라 원동기자전거도 견인 시행 중
 - 오사카의 견인요금은 원동기자전거는 5,000엔(약 47,000원), 이륜차 250cc 미만은 6,000엔(약 56,000원), 이륜차 250cc 이상은 7,000엔(약 65,000원)으로 승용차 14,000엔(약 130,000원)의 절반 수준임
 - 오사카의 보관요금은 자전거 및 이륜차는 30분당 100엔(약 930원)으로 승용차 30분당 300엔(약 2,800원)의 1/3 수준임
 - 일본에서는 이륜차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중





<그림 7-6> 이륜차 견인 및 오사카의 이륜차 전용주차장

부 록

- 1. 견인업체 조사표
- 2. 보관소 실사표
- 3. 승용차 배기량별 등급표

1. 견인업체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 견인원가 분석 및 견인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실성 있는 원가 산정을 위하여 14일 동안의 실제 견인현황을 운영차량별로 항목에 맞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 주관 기관 : 서울연구원

■ 담당 연구원 : 교통시스템연구실

1. 견인 원가 조사표

	구 분	세부내역	연간 발생 원가 (단위 : 천원)	비고
	연료비	평균 소요량 × 단가		연료 종류 구분
-1	유지보수비			정비 및 유지비용
차 과	감가상각비			
량 비	주차비			자기일 경우 별도 표시
1	차량보험료			
	소계			
인	운전직	인원 × 평균 급여		연간급여, 퇴직급여 포함
건	기타 인원			
비	소계			
43	복리후생비			전직원4대보험및4대등
일	사무관리비			
반 관	수도 광열비			납부 영수증 첨부
- 단 리	사무실 임차료			
出	기타 경비			항목 구분
,	소계			
	기타 비용			
	계 (A)			
	견인 수입			
수 입	기타 수입			
	계 (B)			
연간	수지 (C = B - A)			

2. 근로자 근로현황 및 견인차량 운영현황 조사표

	구 분	기 입 내 용						
	근로지수		()명				
	월평균 근무일수		()일				
운전직	일평균 근무시간		()시간				
근로자	임금	기 . 제수당 상약	본급 : (겨금 : ()원/월/인)원/월/인			
	견인 한 건당 수당		()원				
	근로지수		()명				
	월평균 근무일수		()일				
관리직 근로자	일평균 근무시간		()시간				
	임금	기 . 제수당 상	본급 : (겨금 : ()원/월/인)원/월/인			
		①()	<u>(5)</u> ()			
	운행차량	2()	(6) ()			
	차량번호	3()	7()			
견인차량		4()	® ()			
운영현황		1)()	⑤ ()			
	휴지차량	2()	(6) ()			
	차량번호	3()	7()			
		4()	® ()			

조사 1일차 -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차량 번호 ()	[2페이지의 운행차량 1	번호 기입(①, ②, …)]
영업시작시 주행거리	영업종료시 주행거리	일일 주유비	일일 견인건수
()km	()km	()만원	()건

		서는 피전 에 해당히												격,			
	① (2.5톤 미만 ⑤ (경형차) / ⓒ															-)	
1회	피견인차량 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2회	피견인차량 등급	1	/	2	/	3	/	4	/	(5)	/	6	1	7	/	8	
3회	피견인차량 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4회	피견인차량 등급	1	/	2	/	3	/	4	/	5	1	6	1	7	/	8	
5회	피견인차량 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6회	피견인차량 등급	1	/	2	/	3	/	4	1	(5)	1	6	1	7	/	8	
7회	피견인차량 등급	1	/	2	/	3	/	4	1	(5)	1	6	1	7	/	8	
8회	피견인차량 등급	1	/	2	/	3	1	4	1	5	1	6	1	7	/	8	
9회	피견인차량 등급	1	/	2	/	3	1	4	1	5	1	6	1	7	/	8	
10회	피견인차량 등급	1	/	2	/	3	/	4	/	(5)	/	6	/	7	/	8	
11회	피견인차량 등급	1	/	2	/	3	/	4	1	(5)	1	6	1	7	/	8	
12회	피견인차량 등급	1	/	2	/	3	/	4	1	5	1	6	1	7	/	8	
13회	피견인차량 등급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4회	피견인차량 등급	1	/	2	/	3	1	4	1	5	1	6	1	7	1	8	
15회	피견인차량 등급	1	/	2	/	3	/	4	1	(5)	1	6	1	7	/	8	

2. 보관소 실사표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 견인원가 분석 및 견인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보관소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관소의 운영현황에 대한 내용을 항목에 맞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 주관 기관 : 서울연구원

■ 담당 연구원 : 교통시스템연구실

1. 보관 원가 조사표

	구 분	세부내역	연간 발생 원가 (단위 : 천원)	비고
인	정규직	인원 × 평균 급여		연간급여, 퇴직급여 포함
건	기타 인원			
刊	소계			
	복리후생비			전직원4대보험및식대등
일	사무관리비			
반	수도 광열비			납부 영수증 첨부
관 리	사무실 임차료			
刊	기타 경비			항목 구분
	소계			
	기타 비용			
	계 (A)			
	보관 수입			
수 입	기타 수입			
	계 (B)			
연간	수지 (C = B - A)			

2. 근로자 근로현황 및 피견인차량 보관현황 조사표

	구 분	기 입 내 용					
	회사명	()				
	근로자수	()명				
	월평균 근무일수	()일				
정규직 근로자	일평균 근무시간	()시간				
	임금	기본급 : (제수당 상여금 : ()원/월/인)원/월/인				
	근로지수	()명				
	월평균 근무일수	()일				
비정규직 근로자	일평균 근무시간	()시간				
	임금	기본급 : (제수당 상여금 : ()원/월/인)원/월/인				
피견인차량 보관현황	일평균 차량 보관대수	()대				
-660	차량 평균보관시간	()시간				
월 임대료		()만원/월				

3. 승용차 배기량별 등급표

O 승용차 배기량별 등급표(국내 신형 기준)

차종(배기량 등급)	제조사	이름(배기량)				
건 천 (1000gg, 이 된)	기아자동차	모닝(998cc), 레이(998cc)				
경형(1000cc 이하)	쉐보레	스파크(995cc)				
	현대자동차	엑센트(1591cc), 아반떼(1591cc), i30 1.6(1591cc), 벨로스터(1591cc)				
소형(1600cc 이하)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1.4(1396cc), 프라이드 1.6(1591cc), k3(1591cc), 쏘울(1591cc)				
	쉐보레	아베오(1362cc), 크루즈 1.4(1362cc), 트랙스(1362cc)				
	르노삼성	SM3(1598cc), QM3(1461cc)				
	현대자동차	i30 2.0(1999cc), 쏘나타 2.0(1999cc), i40 2.0(1999cc), 투싼 ix(1995cc), 싼타페 R2.0(1995cc)				
중형(2000cc 이하)	기아자동차	k5(1998cc), 올뉴카렌스(1685cc), 스포티지R(1995cc), 올뉴소렌토 R2.0(1995cc				
	쉐보레	크루즈 1.8(1796cc), 크루즈 2.0(1998cc), 말리부 2.0(1998cc), 올란도(1998cc), 캡티바 2.0(1998cc)				
	르노삼성	SM5(1998cc), QM5(1995cc)				
	현대자동차	쏘나타 2.4(2359cc), 그랜저 HG220(2199cc), 그랜저 HG240(2359cc), 싼타페 R2.2(2199cc), 맥스크루즈 2.2(2199cc), 베라크루즈(2959cc), 그랜저 HG300(2999cc), 아슬란 3.0(2999cc)				
대형(3000cc 이하)	기아자동차	k7 2.4(2359cc), k7 3.0(2999cc), 올뉴쏘렌토 R2.2(2199cc), 올뉴카니발(2199cc) 모하비(2959cc)				
	쉐보레	말리부 2.4(2384cc), 알페온 2.4(2384cc), 캡티바 2.2(2231cc)				
	르노삼성	SM7 2.5(2495cc)				
7.7(0000 ÷ 71)	현대자동차	아슬란 3.3(3342cc), 제네시스 3.3(3342cc), 제네시스 3.8(3778cc), 에쿠스 3.8(3778cc), 에쿠스 5.0(5038cc), 맥스크루즈(3342cc)				
고급(3000cc 초과)	기아자동차	k7 3.3(3342cc), k9 3.3(3342cc), k9 3.8(3778cc), k9 5.0(5038cc)				
	르노삼성	SM7 3.5(3498cc)				
12인 이상 승합차	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2497cc)				

O 승용차 배기량별 등급표(경형 및 고급형)

- 등급표에 기재되지 않은 차량은 일반형에 준함

차종(배기량 등급)	제조사	이름
	현대자동차	아토스
	기아자동차	모닝, 레이, 비스토
경형 (1000cc 이하)	쉐보레	스파크
(100000 91 91)	한국지엠	다마스, 라보, 마티즈
	스마트	포투
	현대자동차	다이너스티 3.5, 아슬란 3.3, 제네시스 3.3, 제네시스 3.8, 에쿠스 3.8, 에쿠스 5.0, 맥스크루즈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GH330, 오피러스 GH380, K7 3.3, K9 3.3, K9 3.8, K9 5.0
	르노삼성	SM7 3.5
	쌍용자동차	체어맨
	TOYOTA	Camry 3.5, Sienna, Venza, Avalon
	NISSAN	PATHFINDER, MURANO, GT-R, 370Z, Frontier
	HONDA	어코드 3.5, 레전드, 오딧세이
	VOLVO	V60, S60, S80, XC60, XC70, XC90
¬ ¬ ÷ı	닷지	듀랑고, 어벤져 3.6, 차저, 챌린저
고급형 (3000cc 초과 또는	LINCOLN	MKZ, MKS, MKX
신차가격 4천만 원	Ford	TAURUS, EXPLORER, MUSTANG
초과)	INFINITI	전모델
	BMW	전모델
	LEXUS	전모델
	MASERATI	전모델
	CADILLAC	전모델
	JAGUAR	전모델
	Jeep	전모델
	MASERATI	전모델
	CHRYSLER	전모델
	AUDI	전모델
	Mercedes Benz	전모델
	PORSCHE	전모델